

第256回國會
(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法案審查小委員會)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5年11月30日(水)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小會議室

議事日程

1.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4.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5.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6.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
7.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8.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9.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10.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11. 國慶日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12.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
13.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
1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15.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7.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
18.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19. 地方自治團體에 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 責任運營機關의設置· 운영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1. 責任運營機關의設置· 운영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23. 地方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4.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5.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
26.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7.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9.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3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31.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 관한특별법안
32. 주한미군이전에 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
33. 풍수해보험법안

審査된案件

1.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
2.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
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
4.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
5.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
10. 國慶日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1
11. 國慶日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원 대표발의)	21
12.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맹형규 의원 등 26인 발의)	25
13.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지병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25
6.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7.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8.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9.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1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8
15.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30
1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0
22.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발의)	36
23. 地方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38
24.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38
25.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	38
26.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38
27.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38
2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38
29.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38
17.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18.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19.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20.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42
21.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3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47
3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47
32.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한특별법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48
33. 풍수해보험법안(정부 제출)	57

(10시29분 개의)

○소위원장 **우제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30건이 넘는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위원님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권오을 의원 대표발의)

2.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3. 警察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상

정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 제기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현 위원장님, 경찰공무원법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행자부에서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는데 참석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일단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나서, 다른 위원들 얘기 듣고 나서 한번……

○최규식 위원 아니,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얘기하면 하는 거지 전문위원이 처음부터 나십니까?

○전문위원 김중현 그건 제가……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내리시면 들어오는 거고, 안 그러면……

○소위원장 우제항 아니,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김중현 전문위원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속승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의원 발의안이 각각 근속승진 계급, 소요기간이 다른 점을 비교해서 검토하고 근속승진 기간이 짧을수록 좋겠지만 나중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속승진과 정원의제조항이 법제화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원이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근속승진의 대상과 범위, 기간에 대해서는 경찰의 인사 적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교정직 및 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근속승진이 실적주의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며, 예산당국과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식 위원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근속승진 확대에는 찬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 세 사람의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가다듬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근속승진 확대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권오을 의원님 안하고 강창일 의원님 안은 지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최규식 의원안대로 “한다”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는 자칫 심사승진으로 또 오해를 받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그냥 연수만 차면 다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최규식 의원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정한 임용제한 규정에 위배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붙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는 표현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순경에서 경장, 경장에서 경사 이렇게 가는 경우에 근속승진이 허용되어 있는 그 기간에서도 징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흥 국장, 그렇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래서 무조건 ‘한다’라고 할 수는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근속승진 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일반 행정직이 9급에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되어 있지만 6급까지 가는 데도 평균 16.8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6급은, 경위가 6급인지 어떤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 경위하고 경감을 다 6급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경위를 백보 양보해서 6급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경위까지 가는 데, 경위까지 가지도 못하고 경사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이 70%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인데 권오을 의원님 안대로 하면 현행 7년, 8년 더하기 경사에서 경위 가는 데 10년 해서 2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속승진을 경위까지 허용해도 25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근속승진을 확대하자라는 것이 하위직이 적체되어 있고 일반 행정직에 비

해서 같이 시작해 가지고 너무 늦어져서 상대적 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향상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안이 나온 거라면 그 취지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직 등 같은 특정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소방직도 필요하다면 근속승진 확대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직도 경찰과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심하다 할 정도로 비율상에서 하위직 적체랄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찰을 해 주면 소방직도 해 주자 하는 쪽은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소방직은 안 되는데 어떻게 경찰만 해 주느냐 해서 안 되는 논리에 제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가 좀 있는데 소방직도 또 다음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하고, 저부터라도 어떤 의원님이라도 나서서 해 주시면 적극 협력해서 할 생각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비슷하게 하위직이 적체되어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직은 70%가 경위에 가지 못하고 경사에서 정년퇴직하는 반면에 소방직은 70%가 경위에 해당하는 소방위에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비교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하고 비교를 할 적에 아까 16.8년 하고 경위 6급에 가는 데 가령 비교를 하는데 소방직은 지금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하고 비교하면 그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조금은 덜합니다. 형평이 맞지 않다고 할 적에 비교가 조금 덜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얘기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은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당연히 때가 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방공무원이 안 되니까 경찰공무원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반대 순환논리에 적용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역시 이상적이고 현재 경찰의 상황으로 봐서는 경감까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의 방법론상 경찰조직의 형편 또

타 직종과의 비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기왕이면 일이 성사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는 우선 경위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법안을 제출하신 강창일 위원님!

○강창일 위원 일단은 최규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경감 승진이 어찌면 큰 방향이고 또 원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현실이 재정 문제라든지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등 때문에 경감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우선 경위로 하고 점차적으로 경감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경감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라고 하면 이상하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연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또 정부 측 얘기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적인지, 아니면 법에서 아예 연수를 정하는 것이 더 실효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제가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른 분……

○유기준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경찰의 경사에서 순경까지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법률에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순경의 정원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적고 경사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업무보고받거나 예산을 짤 때 보면 이것 가지고 질책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의 시각에서 한번 보자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고 감축하는 쪽에 아무래도 많이 찬성하실 것 같고,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공무원 직급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보수 대우를 좋은 쪽으로 간다면 국민 부담이 증

가하고, 국민 부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견제를 하도록 우리가 국회에 와 있는 임무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규임용을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경찰의 정원이 하위직이 많은 피라미드 구조인데 경사 경장 순경에서 보면 순경이 1만 2000명, 경장이 3만 1000명, 경사가 3만 4000명으로 역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런 비율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경찰 인력의 확보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자꾸 상위직만 늘어나면 신규임용을 하는 데 어떤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어느 정도는 걸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 최규식 위원님 말씀부터 좀…… 강행규정으로 두느냐, 임의규정으로 두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7급 이하 전 공무원들의 근속승진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한조치, 최규식 위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습시다라는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제한조치를 어떻게 둘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게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결격사유 외에 가령 근무성적이 너무 나빠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T/O 수급상 조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는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두고 구체적인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게 좋을지 하는 의견인데 이것은 주로 조직 내부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때문에 대통령령보다는 해당 기관장인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권오을 의원님 발의안이나 강창일 의원님 발의안에도 있습니다라는 해당 계급에 6년, 7년, 8년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강행

규정하고 임의규정하고 관련해서도 연관이 됩시다라는 다소 경직되게 운영이 되고 법 해석이나 운용상에 많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위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늘릴 경우에 문제가 온다면 2년차, 3년차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수급 운용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해서 소방직도 마찬가지로입니다라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여러 가지 특별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법체계를 달리하고 있고, 보수에서도 소방과 경찰은 법체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을 보더라도 특정직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보수라든가 수당 등에 있어서 일반직에 비해서는 파격적인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5~50%, 어떤 곳은 거의 100% 이상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가공무원에 속하고 인건비 비중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다 받고 있는 대우공무원 수당에서도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직급 조정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오히려 가장 적은 비용 부담으로 조직 전체의 직무 특성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정직과 비교를 한다면, 교정직공무원은 일반직급하고 똑같이 9개 직급체계입니다. 그런데 경위직급은 경위와 경감, 소방직의 소방감은 7급과 6급 사이에 2계급이 끼어 있는,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일반직의 6급까지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위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6급에 해당되는 경감이라는 직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진급하는 기간이 50세 전후 넘어서 더 이상 진급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역피라미드 구조로 현장직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급 구조로만 보면 그런 염려를 할 수 있겠습

니다마는 직무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신규 충원이 꾸준히 돼 나가기 때문에 일정 연도가 지나면 정상적인 직급 구조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임용에 지장은 없느냐는 말씀은 상위 직급이 많기 때문에 하위 직급으로 들어오려고 하겠느냐 하는 측면과 또 상위직만 많지 하위직 정원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라고 보는데 이걸 두 개 다 별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11개 직급 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급은 3개 직급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개~8개 직급이 관리부서에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구대라든가 수사경과제 등으로 인해서 경위급은 아주 노련한 전문적인 실무자의 역할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 인원은 대부분 신입 순경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연도만 되면 무작정 시키느냐, 걸러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 근속승진이 된다 하더라도 하위 법령에 의해서 인력 수급이라든가 부적격자 또는 제한조치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이 승진임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초임 순경이 들어오는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28세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6, 7, 8로 했을 때 몇 년이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2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세 넘어서……

○이인기 위원 지금 경위는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경위는 1만 482명……

○이인기 위원 경사 3만 4000명 중에 연간 경위 승진이 한 1500명 승진하네요? 그런데 심사로 승진하는 경우에 평균 한 8년, 9년 걸립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심사승진이 750명, 시험승진이 750명, 1년에 1500명 정도가 올라가네요? 그러면 근속승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몇 명이 해당될까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평균 잡으면 한 500명가량이 늘고, 처음 시행연도에는 일시적으로 5000여 명가량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인기 위원 이 싸이클이 돌아가면……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게 되고 나면 평균 한 600명에서 700명가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 싸이클이 돌아가는 데 몇 년 걸릴까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한 6년에서 7년 정도,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이인기 위원 그런데 결국 국민들이 마음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경위라 하면 경찰의 간부다 이런…… 근속승진으로 이렇게 되는데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최규식 위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수를 늘리거나 또 간부급이 많아지는 이런 것에 대해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경우 이런 측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환영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의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랄지 사기 저하, 그다음에 심사승진에 대한 압박감 또 시험승진이라도 하기 위해서 밤에 순찰차 세워 놓고 그 불빛 속에서 공부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탈피시켜 주는 게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옛날에 파출소장이 경위하던 시절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르다는 것, 지금 지구대장은 경감이 하고 있고 경위는 경찰청이랄지 지방청에서 전부 지금 실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으로 뗄 수도 있고……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가 늘어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자질과 경험과 실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치안서비스를 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권 위원** 참고적으로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행자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송 위원** 대충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법안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말씀 중에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찰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급 조정을 해서 이걸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경찰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은 국민에게 적절하게 알리면 국민들도 이해를 해주실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경찰이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승진기간도 ‘몇 년’으로 기간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몇 년 이상’ 이렇게 해서 융통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정직·소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최규식 위원께서 적절하게 설명을 하셨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권오을 의원안에 따라서 승진을 한다고 하면 한 25년 걸리고 최규식 의원안에 따르자면 한 21년 이상 걸리는데, 적어도 경찰로 들어와서 20년 이상 봉사를 하면 최소한 경위까지는 승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최소한 국가가 공무원이 봉사한 데 대한 정도의 대가는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경위가 초급 간부인데 간부가 많아지면 실무인력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직급에 따른 업무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이것은 저희가 참고 차원에서

들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 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최규식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하겠는데 대충 정리를 해 보니까 최규식 위원께 양해를 구할 게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에 받을 하고 내년에 받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다 경사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2000명, 내년에 2000명, 3개년에 걸쳐서 해도 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여분을 좀 두면 좋겠네요.

○**최규식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하위 법령에서 ‘결격사유’로…… 그것이 그야말로 결격사유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냥 순차적으로 3분의 1씩 하는 것은 근속승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위원장 우제항** 예산부처의 얘기도 들어 보아야 되겠지만 “한다”라고 그러면 별안간 국민의 부담도 커지니까요.

○**노현송 위원** 첫 해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할 수 있다”로 여분을 주면 자체적으로 경찰청에서 06년도에는 경과규정으로 몇 명을 하고, 07년도에는 몇 명을 하고, 08년도에는 몇 명을 하고 이렇게 한 3년 정도만 하면 다 해소될 것이에요.

제가 소위원장으로 여기에서 예산 문제도 나왔고 국민의 부담 문제도 나왔으니까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규정만 바꾸어 주면 국민의 부담이라든지 규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중재안을 내는 것이에요.

○**유기준 위원** 국민부담에 관련해서 하나 덧붙이면 아마 조만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경찰들 중에 주로 하위직이겠지요. 하위직은 자치단체 소속으로 되면 자치단체가 소속 경찰관들의 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치단체는 지금 있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짰는데 실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현원 그 상태로 오게 되면, 그리고 또 늘어난 상태로 계속 온다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노현송 위원** 자치경찰은 앞으로 솔직히 어떻

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자치경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경찰 인원이 자치단체로 배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기준 위원 일부는 가게 되어 있지요.

○노현송 위원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유기준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하위직 경찰관들이 그리로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강창일 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법이 통과 안 되었는데 우리가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지금 전·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위 경찰이 자치경찰로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겠지요. 전·의경을 국방부에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원이 보충되지 현재의 하위 경찰을 자치경찰로 빼지는 못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위원 상식적으로 하위 경찰에게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주면서 자치경찰로 오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특수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소위원장 우제항 여기서 논박할 것은 아니고……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현재 설계되고 있는 안에 의하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인원과 함께 예산도 가게 되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지금 있는 정원의 상태대로 자치단체에 보내는데 자치단체가 받을 때는 좀 꺾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정원이 늘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방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화되면서 정원 의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편성·운용하고 예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경사만 다 주는 게 아니고 계급별로 나누어서 줄 것 아닙니까? 월급 올리는 것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요.

○유기준 위원 지난번에 국감을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은 자치단체로 가겠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속직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이 경찰보다 일반직 공무원이 두세 배씩 된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위직으로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은 가려고 하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아까 내가 조정안을 냈는데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최규식 위원 예산당국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자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제 의견을 말하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우제항 좋습니다.

○이인기 위원 지금 경장·경사는 근속승진을 다년간 시행해 왔잖아요? 방금 통계를 받아 보니까, 경사 2004년도 승진을 보니까 심사·시험·근속이 비슷하게 1300명이 나오네요.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래서 추정컨대 경위도 시험이 750, 심사가 750, 근속이 750, 예를 들면 이런 구도로 앞으로 갈 텐데 그것이 자리 잡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과도기 5년 동안은 대량으로 진급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시험 숫자가 정해진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의제정원에 의해서 근속승진되는 경우 하고, 기존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해 가지고 승진하는 것은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의제조항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지난번에 순경·경장할 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 줬습니까, 연차적으로 해 주었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최초 도입할 때는 연차적으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습니다.

○최규식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3분의 1씩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심사가 됩니다. 지금 이것은 근속승진이야.

○소위원장 우제항 연도로 자르는 것이지요.

○최규식 위원 8년 이상이면 된다고 할 적에 ‘첫 해는 9년 된 사람으로 하고 그다음 해는 8년으로 한다’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경과규정을 두

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몇 년 이상이면 한다’고 해 놓고 하위에다가 무엇을 해 놓으면 이것이 심사로 또 간다고 봅니다.

○이인기 위원 95년도 처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처음 출발할 때 3년차로 했었고 지금은 7, 8년으로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경장·경사에서는 한 1, 2년이면 소화가 되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순경으로 들어와서 순경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수만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조정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법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합시다라는 유기준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처럼 이것이 실적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무조건 연도만 차면 다 승진을 시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 데 몇 년으로 딱 막아 놓으면 법이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을 하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기준 위원 근속승진 플러스 심사승진을 적절히 믹스한 이런 제도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승진 T/O가 직급조정이나 상위직 정원을 늘려서 많이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인원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전부 그 계급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른 직급은 9급으로 들어와도 퇴직할 때 전부 6급 이상으로 나가는데 경찰은 순경으로 들어와서 만년 경사로 나가게 되기 때문예요.

○최규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장·경사로 승진하는 것은 기간 단축을 하더라도 그대로 놓아 두고 경위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자 이런 얘기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몇 년 이상을 둔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가령 근무성적이 경장·경사의 경우에 매년 10% 정도는 근평이 너무 나쁘거나 징계에 해당되어서 승진 제한규정으로 당해

연도에 승진을 못 합니다.

또 법상 요건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징계를 먹으면 일정 개월 수를 승진 제한을 해서 다음해에 승진하거나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이 문제는 한국말 문제인데 임의 규정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아까 최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말로 뜻은 그런데 법령에서 쓸 때 임의규정은 원칙적으로는 ‘한다’는 얘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하고 단지 운영자나 집행자에게 융통성을 준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아까 최규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어 자체로는 아까 최규식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법을 다룰 때 ‘할 수 있다’ 이 용어가 가지고 헛갈리는데 원칙적으로 ‘한다’ 이것이기 때문에……

○최규식 위원 ‘뭘 뭘 이상이면 한다’ 그러면 안 됩니까?

○노현송 위원 원래 입법취지가 근속승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 달라 하는 것이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바로 이것과 연계되어서 어떻게, 어디에서 정하느냐 하는 근거규정을 지금 강창일 의원님께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승진·임용 방법이라든가 제한, 승진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서장인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 주시는 게……

○노현송 위원 그렇게 되면 내규가 됩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규가 됩니다.

○강창일 위원 예규가 됩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

○김정권 위원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최규식 위원 시행령에 해야지 어떻게?

○전문위원 김종현 권오을 의원님 안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인기 위원 경무국장,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정확히 잘 나왔는

데요, 경위의 점유율은 10%란 말입니다. 경감을 합해서 13%, 행정직은 6급이 26.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등포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7급에서 6급 진급을 시험치고 합니까, 심사합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지방은 거의 다 심사지요.

○이인기 위원 7급에서 6급으로 거의 다 진급을 합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최규식 위원 십몇 년 조금 지나면 거의 다 가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계장이라는 보직을 안 받고도 가 있습니까?

○최규식 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보직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인기 위원 여기에 차이가 있네요.

○최규식 위원 그래서 경찰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참고로 계급체계가 일반공무원은 9단계로 되어 있고, 경찰은 12단계로 되어 있고, 군인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등병부터 올라가잖아요? 병장을 거쳐서 준사관, 원사까지 있고 소위부터 위관급, 그다음에 영관급, 대장까지 16개가 훨씬 넘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부터 간부로 따지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경위가 간부냐를 따지면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우선 김정권 위원께서 예산관계상……

○최규식 위원 그것이 절차상 필요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예산처 먼저 부르고 행자부……

○노현송 위원 그런데 행자부하고 사전에 이런 것 조율이 안 되었어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노현송 위원 어쨌든 발의가 되었으면 사전에 조율도 해 보고 의견도 들어 봐야 되잖아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장관님께서는 보고를 드렸습시다라는 타 부처와의 형평성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곤란하다는……

○최규식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256억……

○최규식 위원 첫 해에 256억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

○소위원장 우제항 다 해서 256억인데, 아까 내가 말씀을 삼갔는데 경장, 경사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별안간에 경위로 자동으로 올라가서 일시에 부담이 되니까 경위는 연차적으로 2년, 3년에 걸쳐서……

○최규식 위원 그것이 전체 경찰인건비의 몇 %나 됩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0.6%입니다.

○최규식 위원 그러니까 경찰조직이 그렇다면 모를까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행자부 말씀하시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조직혁신단장입니다.

근속승진제 확대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제를 앞두고 07년 1월 1일부터 전 부처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될 텐데 총액인건비제하에서는 자율적으로 각 부처가 정원·직급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수당 등을 차별화하는 그런 실적주의, 성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제 확대가, 이것은 물론 요건 심사를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자동승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주의,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경찰직의 근속승진을 확대했을 경우에 경찰과 완전히 유사한 교정하고 소방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지금 7급까지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6급까지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근속승진을 확대했을 경우에 대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직 경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합시다라는 일본의 경우에는 경사 이하 비율이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라는 다른 나라와 계급별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는 경위까지 일제 확대했을 경우에 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경위직에서 적체가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을 확대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각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찰이 특정직이기 때문에 계급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렇게 근속승진을 확대했을 경우에 물론 보임이 자꾸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아직도 지구대의 팀장이라든지 사업소장 이런 직위를 갖고 있고 이랬을 경우에 같은 계급에서도 어떤 경우는 팀장, 어떤 경우는 팀원 이런 식으로 업무의 지휘체통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재량으로 어느 정도 직급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중위직을 늘려 가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당분간은 소요정원을, 매년 경찰공무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릴 때 중간계층의 비율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좀더 상향 쪽으로 늘리는 방안을 실시해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전문위원이나 경찰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있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경찰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액인건비제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취지를 경찰청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도입이 되면 아주 안 되게 돼 있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너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합시다.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리고 성과주의나 실적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현재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노현승 위원 잠깐만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어떻다고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오히려 현재의 인건비에 묶여 버리기 때문에 근속승진제건 뒤편 전부 안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최규식 위원 현행 있었던 것까지 없어진다는 겁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아니지요. 현재의 인건비는, 가령 예를 들어 특별히 인원이 늘면 현재의 인원이 늘기 때문에 상위직으로의 근속승진과 같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다른 데를 감액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가지요.

○최규식 위원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얘기를 꺼낼 수도 없게 된다는 거네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과주의·실적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반직 7급 이하가 근속승진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성과주의나 실적주의에 대한 보완대책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교정·소방과의 형평성 요구는 아까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대민서비스 담당과 실무직이 적다는 것을 타국과 비교를 했는데, 타국은 우리나라 경찰직급 12개 계급처럼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4~5개 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타국은 실무직이 관리자 들보다 월급이 훨씬 많거나 일반직보다 25%에서 50%까지 월급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직급조정이 거의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위직급 근속을 확대할 것 아니냐, 또 특정직의 특성상 업무지휘체통에 혼선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가 아직까지는 직위공모제가 아니라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할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경찰은 지연을 시켜서 일반직보다 한 3년 늦게 시행을 했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시행이 되었고요, 일반직도 현재 6급이라든가 5급은 복수직급제로 해 가지고 같은 직렬 내의 다른 직위가 같은 직책을 맡는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찰의 경사 근속승진제도를 할 때도 경사가 파출소장이었는데도 파출소장 밑의 같은 경사직원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잘 됐다는 것을 말씀드

리고 싶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잠깐만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7급, 8급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지금 7급까지는 근속승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6급은 어떻게 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6급은 거의 다 되기는 하지만 심사를 해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경위가 몇 급이에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6급에 경위·경감이 걸려 있는데……

○소위원장 우제항 정확하게 경위는 몇 급이고 경감은 몇 급이고…… 경감은 몇 급이에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일단 경위는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감도 6급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니까 거기서 논리적 모순이 나온다고요.

지금 6급도 아니고 7급도 아니고 걸쳐 있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아닙니다.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위원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경위·경감을 묶어서 6급 이렇게 했던 말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그건 인식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경찰관들이 경위까지 올라가는 데 몇 년, 경감까지를 6급이라고 치면 일반 공무원들이 6급까지 되는 데 몇 년, 이런 대비표를 한번 보셨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예,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실적주의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건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실적주의를 위배하면 안 되지요. 실적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그것을 대비해야지요. 아무나 다 시켜 주면 안 되지요.

○노현송 위원 실적주의·성과주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경무관, 치안총감까지 죽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경위까지 해서 승진하는 데 그게 무슨 실적주의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현재 7, 8급은 그냥 근속승진하잖아요. 7, 8급 근속승진하면 그것도 실적주의 위배게요? 그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라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실적주의 논쟁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해결해야지요.

○최규식 위원 성과주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은 성과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제도를 하면서 성과주의로서 인센티브를 주고 다양하게……

○소위원장 우제항 자동 승진한다고 해서 실적주의 위배는 아니란 얘기네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제가 행자부에 질의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6급의 근속승진제도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으면 6급까지는 최대한 승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직접구청장을 하신 노현송 위원님께서도 어지간하면 6급은 승진 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6급의 점유율은 26.4%로 상당히 높는데 경위의 점유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18시 퇴근 후 동시에 전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파악해 보면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숫자가 가장 많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같은 공직에 근무하는데 일반직과 경찰직을 업무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방금 행자부에서 온 자료를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외국 경찰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의 경우에 경위의 점유율이 28.63%, 경감이 6.96%로 경사나 경장보다 경위, 경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신분의 보장, 생활의 안정, 직업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경위의 점유율이 12%인데 일본의 경위 점유율은 28%, 우리는 경감이 3%인데 일본은 경감의 점유율이 7%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외국의 제도와 국내 여건을 보더라도 이 기회에 경위의 근속승진제도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현송 위원 한 가지 여쭙 볼게요.

여기 보면 또 조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위계급인 경감으로의 승진적체가 야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야 어차피 현재도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은, 경찰이 퇴직 때까지 봉사하면서 경위로 퇴직하는 것하고 경사로 퇴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느끼고 경위로 퇴직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사 경감으로 승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승진적체가 되기 때문

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본인들은 경위로만 퇴직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최규식 위원** 몇 년 하지도 못해요.

○**강창일 위원** 행자부에서 특별히 크게 반대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기본적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지요.

○**강창일 위원** 지금 팀장을 맡고 계신데 그 정도 얘기만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의 사기문제, 대국민서비스 향상 등 그거야말로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혁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옛날의 것을 고스란히 지키자 하는 오히려 아주 반혁신적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크게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강창일 위원** 신중하게 해 달라, 그 정도로만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대부분 논의된 것 같으니까 이제 보내시고 예산처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예산처에서 오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예산처의 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그 이유가, 내년에 공무원노조가 생기는데 경찰이 이렇게 하면 일반직 6급까지는 그냥 갑니다. 일반직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6급이 어떤 직위를 차지하느냐 하면 세무서 같은 데서는 다 계장급입니다. 경찰도 물론 경위가 파출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장이나 팀장, 소장 그런 것을 하려면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저절로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돈으로만 따져 보면 경찰만 했을 때 이게 완전히 성숙이 되면 한 500억 정도가 추가가 되지만 이것을 일반직까지 합치면 또 마찬가지로 한 500억 정도, 그래서 한 100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또 이게 지방직 공무원까지도 파급이 될 겁니다. 지방직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잘하는 사람들 성과급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는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파출소 소장의 계급이 뭘니까? 잘 모르시지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지금 저는 경위로 알고 있는데요. 특수파출소장하고 지구대 소속의 치안센터소장 이런 사람들은 경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건 알고 계시네요.

○**강창일 위원** 또 500억 숫자도 정확하지 않아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이게 당장은 100~200억에서 시작을 합니다.

○**최규식 위원** 뽑아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뽑아 봤습니다.

○**최규식 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06년도는 경찰만 하면 140억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되면 한 3~4년 후에는 400억, 574억까지도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최규식 위원** 경찰이 더 많아진다고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누계가 되니까요.

○**최규식 위원** 누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년에 드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2년이면 얼마 되고 3년이면 얼마 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아닙니다. 1년에 드는 액수입니다.

○**최규식 위원** 내년에는 통계가 140여 억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드는 액수를 물어본 건데 그것을 2년을 합쳐 가지고 말씀하시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아닙니다. 2년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당해 연도에……

○**최규식 위원** 내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내년에 143억이고요, 07년도에는 263억……

○**최규식 위원**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08년도에

439억……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최규식 위원** 액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갈수록 인원은 더 많아지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만약에 경위로 자동승진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하위직급이 줄기 때문에 봉급 차이밖에 늘지가 않습니다.

○**최규식 위원** 돈이 더 늘어나느냐고요.

○**유기준 위원** 조금 늘어나지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그러면 이것은 실무적인 거니까 저희가 경찰청하고 다시 계산해 보겠는데 이것은 저희도 봉급 차이만 보고 한 겁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저희들이 계산해 본 바로는 전부 다를 자동승진시켰을 때 256억이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몇 년도에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내년도에……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08년도, 09년도는 얼마 나오는지 해 보셨어요? 늘어가는 추세가 어떠냐고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몇 년간은 그러겠지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그래서 저희가 해 보면 이게 엉터리가 아니고 이대로 늘어나는 추세면 한 5년 후에는 570억까지 올라간다 그런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 후에는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그 후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기획관,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경찰관을 자동승진시키면 인건비 부담이 총액제로 는다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관계로 다른 공무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아까 안 계셔서 그런데, 경위가 6급이나, 경감까지 6급이나 하는데 그중에서 경위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위까지 올라오는 데 소요연수를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 6급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6급보다 더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차이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승진을 좀 늦게 해 주면

예산이 절약된다는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거꾸로 경찰관 승진시켜 주면 예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 수준에 맞게 늦게 승진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논리에 대해서……

○**이인기 위원** 같이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은 대개 6급으로 승진하는데, 그 말씀이예요.

○**소위원장 우제항** 아까 그 논리는 뒤집어서 따지면 그런 논리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절약이, 전체 인건비에서 경찰공무원 배정액이 몇 %인지는…… 물론 예산처에서는 당장 돈 늘어나는 것이 문제이지는 한데 여기는 국회 아납니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그 문제는 모든 조직의……

○**최규식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평균 소요연수 16.8년이면 6급에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6급에 갑니다.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우리도 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해 주겠다 하는 논리인데 그러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정확히 연수 지켜서 근속승진하기로 하면 지금 16년이 되는 게 아니라 25년이 되든지 그래야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5급만 13년 반 했습니다.

○**최규식 위원** 지금 6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다 하면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직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경찰은 경찰청장이 된다는 비전이나 있지요. 이 사람들은 출입국장이 끝입니다. 2급짜리가 끝인데 그 끝도 지금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 낙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승진이……

○**최규식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지요. 경찰이 어떻게 지금 경찰청장이 된다는 꿈을 가지고 합니까? 경위라도 ……

○**노현송 위원** 아니, 의견만 들으면 되지 뭘 여기에서 자꾸 논쟁을 해요. 의견만 들었으면 됐어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경찰도 경찰국장이 된다는 것은 기대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그래서 저희는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보상을 자동승진이나, 아니면 돈이나, 그래서 저희는 사실 돈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일반직하고 달리 17만 원에서 최고 47만 원까지 직무수행비를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직에서 자기들도 경찰하고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수당이 9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경찰의 최저한인 17만 원까지는 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교정직도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서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들어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돈의 논리만 펴자면 거꾸로 다 일반직 공무원 승진 안 시킨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규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6, 7, 8로 따지면 거기는 오히려 16년 동안에 주사 못 되지, 20년 넘지요. 그런 논리가 나온다고요.

○**전문위원 김종현** 그러면 정리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예, 그러면 최규식 위원이 '할 수 있다' 그 부분만 양해가 되시면……

○**유기준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걸러주는 장치가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똑같은 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철밥통을 더 강화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지휘관에게 좀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소위원장 우제항** 예, '할 수 있다'로 하니까……

○**최규식 위원** '할 수 있다'로 하는데요, 가령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로 하는데 더 거르는 장치를 어떤 것을 말하

는 것이지요? 순차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유기준 위원** 순차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인기 위원**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든지 징계라든지 해서 지금 경사에서 두는 의례적인 제한사유 이외에 조금 더 하나 걸쳐놓는 것이 지휘관들이 통제할 때 낫지 않겠느냐……

○**최규식 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정합니까?

○**유기준 위원** 내규나……

○**최규식 위원** 내규는 좀……

○**유기준 위원** 심사승진에 들어가는 요소를 일부 넣어 가지고 근속승진에다 포함시키자 이런 것입니다.

○**이인기 위원** 경찰에서도 지휘권 차원에서 두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예, 지금 현재도 경사 이하를 할 때 자체의 내규로 해서 다 정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거의 7년, 8년 되면 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만 승진 안 시키는 사람은 징계요구 중이라든지 아니면 근평이 최하위가 되어 가지고 근무실적이 너무 저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 확률이 몇 % 됩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한 10% 정도 됩니다.

○**이인기 위원** 그 배제될 확률을 경위에서는 조금 높여 주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저희가 앞으로 경위의 내부지침을 정할 때 경위에 대해서는 경사하고 같은 맥락을 유지하되 근평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경위 같으면 간부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승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경찰 위상에도 안 좋습니다.

○**김정권 위원** 그리고 원래는 경장·경사는 7, 8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 6, 7로 하면 여기에서도 좀……

○**소위원장 우제항** 어제 제가 경찰청장한테 물어봤잖아요. 큰 문제없다고……

○**최규식 위원** 지금 경찰은 6, 7, 8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김정권 위원** 아니, 7, 8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아니, 7, 8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다운시키고 ‘이상으로 한다’ 하면……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할 수 있다’…

○**이인기 위원** 행정직하고 맞추어야지요, 행정직은 6, 7년인가 7, 8년인가, 몇 년이에요?

○**전문위원 김종현** 7, 8입니다.

○**이인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꿀 수 있겠네요.

○**최규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것을 통칙에다가 해 놓았던 것을……

○**전문위원 김종현** 행정직은 규정이 아니고 여기는 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따로 가자는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6급까지 나오게 되면 내가 또 경감 얘기를 주장하게 된다고요. 일반 공무원에 맞추자고 하면, 그래서 내가 경감 얘기를 꺼낸 건데, 경감까지 하자 이렇게 나오지요.

○**최규식 위원** 지금 6, 7, 8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상’으로 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가자고 그러시면……

○**이인기 위원** 원상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토론할 수도 있는 거지……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논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이인기 위원** 반대하는 뜻이 아니고요. 입법의 균형상 우리가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1, 2년 늦게 시작한 것 아닙니까? 늦게 시작해서 98년도에 1년씩 줄였잖아요. 98년도에 줄일 때 일반직도 줄이니까 같이 줄인 것 아니에요? 98년도에 8, 9년을 7, 8년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때 일반직을 줄이니까 같이 줄인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현** 그때는 그쪽하고 맞춘 겁니다.

○**최규식 위원** 그러면 이 위원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금 일반 행정직은 7급까지만 근속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경위까지로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마당인데 똑같이 연수를 맞추자고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경위까지 가는 것은 못 하는 거지요.

○**이인기 위원** 내 말은 어떤 뜻이나 하면 우리가 제도를 하는데 행정부에서 다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의견의 논리의 타당성을 찾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데 소요연수는 국가의 큰 틀과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김정권 위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는 있네요.

○**유기준 위원** 경찰한테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김정권 위원** 7, 8년을 6, 7년으로 했을 때 공무원 노조 측에서 개정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낮추어지고 또 저쪽에서 그러면 또 낮추고 계속 이렇게 가니까 그런 점도……

○**최규식 위원** 지금 어차피 경찰의 사기진작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김정권 위원** 사기진작이니까 경위까지 해 주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7, 8, 9 정도로 해 준다는 거……

○**유기준 위원** 이래 가지고 내년에 범 죄율 늘어나고 체포율 감소되고 그러면 원상회복시킨다고 약속하세요.

○**노현송 위원** 지금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문위원 김종현** 7,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7, 8년이요.

○**최규식 위원** 그 7, 8은 일반 행정직은 경찰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다 올라갑니다.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6, 7, 8로 해도 저희들은 21년이 걸립니다마는 일반직들은 16.5년이 걸립니다.

○**유기준 위원**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강창일 위원** 그러니까 ‘이상’자를 넣으면 돼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표결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을 지지하는 분은 몇 분이 계시고 하는 의견을 한번 조율해 봅시다.

○**최규식 위원** 유기준 위원님도 ‘이상’을 붙이면……

○**유기준 위원** 아니, 이인기 위원도 뭐 그렇

계……

○이인기 위원 저도 뭐, 내가 말하는 건……

○소위원장 우제항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인기 위원 말 좀 하십시오. 나도 그분들도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이 결국 국가의 큰 인사정책의 틀과 같이 움직여 나가는데, 우리가 보통관계가 아니고 특별관계인데 특별관계이면서 이것을 든다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인사시스템상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9, 8에서 7, 8로 되는 제도도 도입되고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일반직에 먼저 도입되고 변경도 같이 되었다 이 말씀도 드리는 것이고, 속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운영규칙에 보면 두 군데 정도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가할 수 있네요. 여기 제4조에 보면 “근속승진 임용대상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경위를 근속승진을 할 경우에는 경장·경사보다는 이 근무성적 평점 규정을 좀더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 개진을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런 각도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유기준 위원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강창일 위원 그리고 경찰청에서 답변하시는데 상대방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할 때 일반 공무원은 어떠냐 했더니 “6, 7, 8, 9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틀려요. 지금 급수가 하나 많습니다. 9급에서 6급까지 경찰청이 급수가 하나 더 많아요. 실제 6급에 경감·경위가 같이 있거든요.

○노현송 위원 엄격히 따지면 7급이지.

○강창일 위원 7급이에요. 그래서 ‘급수가 하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지 ‘일반직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이쪽이 특혜 받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요. ‘급수가 하나 많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김종현 그러면 법안 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공무원법이라는 제명을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의2(근속승진)”의 경우에는 아까 ‘임의규정화 한다’는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일단

권오을 의원님 안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아까 최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조항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11조의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장·경사·경위로 각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아까 최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삽입을 해 가지고 권오을 의원님 안대로 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은 제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넣자고 한 것인데, 뭐 빼버리면 그냥 ‘할 수 있다’지요. 아까는 ‘한다’ 그러면 아무나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는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문위원 김종현 그러면 제11조의2는 그대로 권오을 의원님 안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의 경우에는 역시 권오을 의원님 안대로 가는데 그 속에 보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급 7년 이상”을 ‘6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경장을 경사로 할 경우에 “8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바꾸고 경사를 경위로 할 때 “10년 이상”을 ‘8년 이상’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에 있는 제3항 정원의제규정은 세분 의원님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 주실 부분은 부칙 부분인데,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이냐, 안 그러면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냐 그 부분만 결론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6월로 해야 될 거예요.

○전문위원 김종현 6개월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창일 위원 내규도 정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최규식 위원 경찰은 어떻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강창일 위원 어렵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바로 시행해도 내년 3월 1일 발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규식 위원 아예 예비비에서 이것을 쓰더라도

도, 그런 얘기인가요?

○**노현송 위원** 아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최규식 위원**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1월 1일로 하면 예산당국하고 또 부딪힐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노현송 위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조정하는 내부적인 작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유기준 위원** 어차피 내년은 예비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2007년부터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되겠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래서 반만이라도 국가 부담을 덜 줘야지.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저희들 정기인사를 경위 이하는 내년 3월에 하기 때문에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3월 1일까지……

○**최규식 위원** 경찰이 어려움이 없다면 이왕 경찰의 사기 진작 선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줄 필요는……

○**소위원장 우제항** 3월에 인사가 있습니까?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예, 3월에 경위 이하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작업하면 내부 절차를 다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게 다른 부처들 의견도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이 수반……

○**소위원장 우제항** 예산처에서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청이 그 부분만 양보를 해 주세요. 예산처에서도 반대하는데 예비비에서 내년에 인건비로만 다 갖다 쓰면 어떻게 하나?

○**전문위원 김종현** 그러면 6개월……

○**소위원장 우제항**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해야지요.

위원님들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처도 반대하고……

○**최규식 위원** 그러면 공포 후 3월로 할까요?

○**강창일 위원** 3월은 어때요?

○**유기준 위원** 6개월로 넣지요.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여기는 경찰청 이야기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직급 편제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야 되고 예산도 따라 되기 때문에……

○**최규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년 경사 하다가 8년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해져 가지고 경위로 퇴직하는 것 하고…… 잘 아

시잖아요? 경사 퇴직하는 것 하고 경위 퇴직하는 것 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왕이면 나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데도 우리 보통 늘 생각하는 식으로 ‘준비기간이 한 6개월은’…… 이런 것을 꼭 우리 위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됩니다.

○**강창일 위원** 얼마 되지 않을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 당장 그만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1년 정도 사이에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김정권 위원**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이 법 며칠 상간에 그 앞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강창일 위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승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월 1일에 승진이 있다고 하길래 이왕 하는 김에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3월 1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유기준 위원**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최규식 위원** 이미 퇴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퇴직하겠습니까?

○**노현송 위원** 실무적으로는 어때요?

○**김정권 위원** 그랬다손 치더라도 당장 승진하고 바로 퇴직할 사람을 진급시키고 이러지도 않을 것인데……

○**노현송 위원** 2006년 1월 1일이면 한 달도 안 남은 것인데……

○**소위원장 우제항** 퇴직할 사람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못 해.

○**강창일 위원** 3월 1일로 하자고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저희들 입장에서는 1월 1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은 시행되지만 최초로 적용되는 것은 경위 임용할 때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소위원장 우제항** 유기준 위원님, 1월 1일로 해 줘도 실제로 돈 나가는 것은 3월 1일이라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6개월쯤 후에 하자고요. 왜냐하면 법이 대부분 공포 후 6월……

○**김정권 위원** 그렇게 해도 3개월 차이거든요.

○**소위원장 우제항** 3개월 차이인데……

○**강창일 위원** 3월 1일로 하면 어때요?

○**소위원장 우제항** 1월 1일로 이 법을 그냥 둔

다고 해도 실제로 국가가 부담되는 것은 3월 1일이고 6월 1일로 한다고 해도 3개월 차이거든요. 경찰관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금방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서……

○**유기준 위원** 어차피 전문위원이 법안을 다시 만들고 해야 하니까 산회하고 난 후에 하시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남았네요.

○**강창일 위원** 잠깐만, 여쭙습니다.

해양경찰청도 전부 여기 들어와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경찰이니까 경찰공무원이지.

○**강창일 위원** 따로 법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경찰청경무기획국법무과장 최동해** 현재는 경찰공무원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점심 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강창일 위원** 아니, 경찰청 관계 있는데 하나 해 놓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조문 정리해야 되니까……

○**전문위원 김종현** 조문정리는 의결하고 난 후에 3개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시행일을 언제 할지 그것만 결정합시다.

○**이인기 위원** 4번, 5번 안 합니까?

○**강창일 위원** 4번, 5번 해 놓고 점심 먹자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점심 먹고 쉬었다가 해야지.

○**강창일 위원** 경찰청 하니까 경찰청 끝내 놓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법이 다르고 실무자도 달라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우제항**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아까……

○**전문위원 김종현**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11조의2제1항은 권오을 의원님 발의안대로 가고, 2항은 권오을 의원 발의안으로 가는데 본문 속에 있는 7, 8, 10년을 6, 7, 8년으로 합니다.

다음에 정원 의제규정은 세 분 의원님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마지막으로 부칙

부분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유기준 위원이 양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지요.

○**전문위원 김종현** 위원님이 양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기준 위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언제 되는데요?

○**전문위원 김종현** 올 연말까지는 되겠지요.

○**최규식 위원** 통과가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내년 2월 국회도 있으니까요.

○**전문위원 김종현** 예, 3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보통 공포 후 몇 월 몇 월 이렇게까지 날짜를 박아서 하는 시행일이 잘 없는데……

○**전문위원 김종현** 공포 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만일에 본회의에서 어떤 사정으로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최규식 위원** 그러면 공포 후 2월로 하지요.

○**유기준 위원** 공포 후 3월로 하지요.

○**노현승 위원** 그러면 3월 1일이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정부에 이송이 되어서 공포하는 데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

○**전문위원 김종현** 빨라도 1월이 되기 때문에 3월 1일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유기준 위원** 원래 공식이 있는데 물론 개개의 사정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있는 공식에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자꾸 여기에다가……

○**전문위원 김종현** 통상적으로 한다면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법도 많지요.

○**유기준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최규식 위원** 3월 1일이라는 날짜를 박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3월 1일을 역산해서 하다 보니까 공포 후 2월이면 되겠다는 뜻이지 그냥 편의적으로……

○**유기준 위원** 내가 공포 후 2월은 못 들어 봤어요. 물론 공포 후 1월 해도 되고 다 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경찰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 경찰 특혜적인 법안을 해서 부담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면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왕하는 김에 왕창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부칙 조항을 없애 버리지요. 시행 시기를 두지 않으면……

○최규식 위원 어렵게 3월 1일에 꼭 맞출 것 없이 그러면 공포 후 3월로 하세요.

○소위원장 우제항 부칙에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은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 조항을 빼 버리면 저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3월 1일부터 나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결론 아니에요?

○유기준 위원 3월 1일을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노현승 위원 인사가 3월 1일에 있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에 맞춰 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이왕이면 처음부터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유기준 위원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공포 후 3월로……

○전문위원 김종현 2006년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유기준 위원 그런 점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종현 일단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3항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3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종합 정리된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럴 때 경찰청 측에서 나온 사람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4.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5. 警察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14시36분)

○소위원장 우제항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제기권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 업무의 현장성, 즉시성, 예측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경찰법에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 정하든가, 이의제기권의 법제화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제화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과 함께, 이의제기는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이므로 법에 규정해도 무방하고 이의제기권은 반드시 필요하며, 기강 해이 등의 문제점이 없고 구체적 운영 방안을 하위 법령에서 마련하면 되며, 경찰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의제기의 방법과 효과 등에 대한 경찰청 안을 소위에 제출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자율방범대 규정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이 옳고 경찰법에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역토착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치안의 보조인력으로 필요하므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파출소 등을 자율방범대에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자율방범대의 헌신적 봉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지난번에 경찰청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다면서요.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한
다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경찰청에서는 지
난 행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 법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
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소위원회에 계류시키
고 다시 의견을 내서 하지요.

○**경찰청경무기획국장 홍영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유기준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안 5항
에 대해서는……

○**유기준 위원** 계류시켜 놓고 이야기를 하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법체계도 안 맞으니까 4항,
5항은 계류시키는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보고
한 대로 의사일정 4항과 5항은 폭넓은 의견 수렴
과 심도 있게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찰법 법안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돌아가셔
도 좋습니다.

10. 國慶日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 원 대표발의)

11. 國慶日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규택 의 원 대표발의)

(14시42분)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일괄 상
정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
정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법안
취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던 건입니다.
다만 공휴일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우선 듣기
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행자부 의정관입니
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공휴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6월
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정

리가 되었습니다. 식목일은 2006년부터 공휴일에
서 제외하기로 하고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하
기로 하는 것으로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이인기 위원** 제헌절도 제외하기로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예.

공휴일에 대한 문제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
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하게 논의
가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한글날은 최근에 국
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대부
분이 훈민정음에 대한 것을 국보 최고 1호의 개
념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전체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의 보물로 생
각하는 개념하고 국경일이라는 개념은 차원이 조
금 다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국경일로 되어 있는 네 가지의 국경
일이 제헌국회에서 정한 것입니다마는 그 네 가
지가 국가의 기본, 국기, 기틀을 바로잡고 건국의
이념을 세우는 의미의 국경일로만 네 가지를 생
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국경일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
다.

○**소위원장 우제항** 이것이 정부 측 의견으로 나
온 내용입니까? 개인적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지
요. 정부 측 의견으로 나와야지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그렇습니다. 신중하
게 좀더 논의를 하고……

○**소위원장 우제항** 논의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논의하라는 얘기인지 정부 측에서 논의한다는 얘
기인지 분명히 얘기하세요. 반대면 반대다, 찬성
이면 찬성이다 정부 측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요. 국경일이지만 쉬지 않는 국경일인데, 다
만 국경일에 대한 개념이 제헌절과 같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날 기념이라는
것은 국경일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습니다.

○**이인기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

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49년도에 공포를 하면서 그 무렵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네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제헌절은 국경일에는 들어가 있는데 2008년부터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빼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 지금 우리 눈의 잣대로 보면 3·1절, 개천절은 몰라도 제헌절, 광복절이 특별히 국경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지냅니다마는 이것이 꼭 4대에 들어가야 되느냐, 오히려 한글 만든 날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49년도 그 당시에는 나라가 독립하고 나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공휴일에서 빼다면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취지가 공휴일을 빼다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노현송 위원** 저도 이인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근간을 보면 결국 그것이에요. 우리가 국경일을 만들 때 국가의 근간에 관한 것을 개념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 이외에 더 있습니까? 그것 밖에 없지요?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것은 공휴일 문제였는데 공휴일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생산성 문제 등등 해서 공휴일 문제 때문에 연기되어 왔던 것인데 국경일의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경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국경일로 할 것이냐, 국가가 경사스럽게 생각하고 경축할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국경일인 것이지, 그러면 제헌절은 왜 국경일로 합니까? 도대체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명분이 서야 얘기가 되지 얘기를 들어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어요.

○**강창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 말씀 중에서 조금 이상한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보다 한글날이 더…… 이 이야기는 어색합니다.

○**노현송 위원**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강창일 위원** 노현송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

인데 3·1절은 독립 관련 아닙니까? 개천절은 우리 민족이 열린 날 아닙니까? 한글은 민족 최고의 문화 자산이거든요. 한국민족 이럴 한글과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격을 쳐준다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다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글 이상 우리 민족을 징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오히려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 지정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혹시 정부 측에서 국가의 기틀이라든가 그런 이유 말고 한글날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한글을 사랑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계몽하고 확산시키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부분은 국경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와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해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국경일은 가급적이면 적게……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국경일이라는 것이 제헌국회 때부터 해서 한 50년 가까이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노현송 위원** 그거야 바꿀 때가 되면 바꾸는 것이지.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그래서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들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노현송 위원** 국민들 여론은 찬성이지요. 그것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아직까지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이런 국민 여론 수렴을 했던 예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글학회 주관으로 여론 수렴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위원장 우제항** 국경일로 만들자는 운동이 10년 됐는데……

○**노현송 위원** 언제 여론조사 해서 국경일 정했습니까?

○**유기준 위원**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는 문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국경일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국경일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규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 현재의 규정

을 보면 두 번째 카테고리, 국경일이 공휴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개정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입법조사관보 오명희 예,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첫째, 국경일이 되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고, 여기 보면 ‘개국이나 국권회복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날’을 그동안에 경축해 왔고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3·1절이라든지 광복절, 주권을 찾거나 주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날, 개천절, 이전에 나라가 세워진 날,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진 날 이렇게 해서 국경일을 경축해 왔는데 한글날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관례에 비추어 보면, 국경일을 정한 이유에 보면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국경일이 되는 경우에 공휴일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경일은 다 쉬고 그랬는데 국경일로 하면서 안 쉬다는 것은 뭔가 그동안의 관행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국민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상임위에서 그런 말을 해 가지고 제 홈페이지하고, 한글학회에서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10월 초가 되면 사실 계절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공휴일이 많이 있습니다. 추석도 그 즈음이고 또 주5일제 하고 그러면 10월 초에 다른 나라들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연 7일 정도 놀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공휴일은 별개라니까요.

○유기준 위원 관례가 그렇다는 얘가지.

○노현송 위원 관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휴일은 별개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공휴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기준 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노현송 위원 이 보고서는 지금 것이 아니고 옛날 거라고.

○입법조사관보 오명희 전체회의에 상정된 당시에는 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새것으로 가지고 오세요.

○최규식 위원 저도 한 가지 물겠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규정하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근간을 창제한 날, 당연히 국경일이어야 하고 왜 국경일이 안 되었는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국보 얘기를 했는데, 송레문이 국보 1호인데 이것을 만일에 바꿀 경우에 어떤 것이 국보 1호냐 하면 국민들이 전부 훈민정음해례본을 제일 많이 뽑을 정도로 국보지요. 그러니까 한글은 국보고, 국경일은 뭐냐 하면 그 국보 1호를 만든 날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자는 것이니까 국경일로서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노현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것이 국경일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뒤늦게 국경일로 하려다 보니까 공휴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실 이 문제에 걸려 가지고…… 유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월에 계속 공휴일이 많고 국가경쟁력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사실 그런 우려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는데 그 문제가 지금…… 자료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보면 되겠지만, 이제 그 문제가 해소가 됐으니까 유기준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경쟁력 부분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유기준 위원께서는 국경일은 과거의 전례로 봐서 다 쉬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최규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유기준 위원 그리고 원래 국경일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개국이나 국권회복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접 관련이 있는 날을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 이렇게 정의를 해 버렸

다고요. 여기에 과연 한글날이 포섭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강창일 위원 예, 포함이 됩니다. 민족의 기초를 다졌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유기준 위원 그렇게 자꾸 법률을 확대해석 한다고 그러면 국군의 날도……

○강창일 위원 아니지요. 국군의 날하고 한글 문제를 같이 대비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한글이야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자산이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원장 우제항 논쟁 그만하시고, 한 가지 화제를 돌려 봅시다.

전 세계에서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누가 만들었다, 그 만든 날짜 가지고 있는 나라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없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우리나라 대단한 것 아니에요? 전 세계 문자 중에서 그 만든 사람, 만든 날짜, 반포한 날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 전 세계, 유네스코에서도 할 만한 날인데 국경일로 하는 데 대해서 손색은 없다고 보는데.

○유기준 위원 국경일에 대해서 개념부터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소위원장 우제항 그런 것은 살펴봐야 되겠지요.

○유기준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경일은 하더라도 공휴일은 빼는 전제하에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국경일의 개념에 포섭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넣는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다른 의견 없고, 정부 측에서도……

○최규식 위원 그다음에 이규택 의원 발의안에서 여주에서……

○노현송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어.

○최규식 위원 그러니까 대안이에요? 이것 그냥 여기에서 채택하지 말고 신기남 의원안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지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규택 의원님 안에도 국경일이 똑같이 신기남 의원님 안 같이 되어 있지만 다만 뒤의 단서에 기념행사 이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폐기하고 대안으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할지 그것

이……

○이인기 위원 그것이 맞잖아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런데 내용 다 똑같고 글자 틀린 것인데 이것을 채택하지 않는데 대안으로 넣으면 여기 살아 있는 것도 우습잖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절충되든지 해야지 이것은 한글날 행사는 여기서만 하고……

○이인기 위원 그런데 공휴일로 안 한다는 내용이 부가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공휴일로 안 한다는 부분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이인기 위원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고, 법의 정신에서 원래 국경일은 당연히 공휴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빼는 것이 속기록상에 정리가 되니까 사실은 그 A안 내용도 조금 변경된 내용이지요.

○최규식 위원 국경일은 당연히 공휴일이다 그것이 법상……

○노현송 위원 법이 아니라고.

○최규식 위원 그러니까 이인기 위원님 말대로는 되지 않지요.

○이인기 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령을 고치라 이 말이지요.

○노현송 위원 이미 고쳤다니까.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대통령령은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현송 위원 고쳤지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원래 당초에는 국경일이 전체가 공휴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것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2조2항에 보니까 고쳐 놔네. 이것을 그대로 두면 되네.

○소위원장 우제항 위원님한테 자료를 나누어 드리세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제가 결정하시기 전에 한 말씀만……

○소위원장 우제항 기회를 드릴게요.

○이인기 위원 대안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노현송 위원 이것 두 분이 다 똑같은 안인데 끝에 다만 단서규정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단서규정만 빼는 것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 분 것을 같이 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최규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아까 물어본 것이지 신기남 의원안으로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대개 지금 국민들의 정서상 국경일 하면 일단 쉬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경일을 정해서 다 쉬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 규정은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는 날이다 그러면 약간……

○이인기 위원 제헌절도 이번에 안 쉬기로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런 국민들이 대다수이고, 참고로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리고 오히려 국경일이라고 그러면서 쉬지 않는다고 그러면 생각 있는 국민들은 잘했다고 그래. 오히려 상정은 올리고 실제로는 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부 측에서……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수석님께서 하셨는데요.

○노현송 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소위원장 우제항 오히려 나라에서 한글은 올리고 그 대신 우리가 한글을 더 빛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좋지.

○유기준 위원 여기 한글학회에서 안 오셨지요? 한글학회에서 저한테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국경일로 하고 공휴일은 안 해도 된다……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사실은 공휴일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 법안이 처리가 안 돼서 제헌절 부분이 2008년부터 공휴일 안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주5일근무제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경쟁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은 어느 나라든지 국경일이라면 다 휴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인데 그때는 사실은 구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국경일로 하면서 다시 이것을 공휴일에서 빼는 것을 상식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은 좀……

○소위원장 우제항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정했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공휴일을 없앨 기회가 있다면, 사실 신정 같은 것은 의미 없잖아요? 그것을 줄일 수 있다면 국경일인 한글날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니까 일하는 국경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0항과 11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신기남 의원안과 이규택 의원안을 통합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빛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예요. 우리가 국경일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일하는 국경일로 고치자고요.

○행정자치부의정관 김국현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수고하셨습니다.

12.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 (맹형규 의원 등 26인 발의)

13.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지병문 의원 외 3인의 소개로 제출) (15시05분)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으로 의사일정 12항과 13항,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과 청원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명칭 변경에 관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였는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첨부된 결의안(대안)을 기초로 자구 정리 등을 비롯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에 대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건은 맹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이 있고 지병문 의원이 소개한 「학생의 날」 명칭변경에 관한 청원이 있습니다. 국회 의안처리 관례를 보니까 결의안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두 안을 각각 폐기하고 결의안 형식으로 해서 대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유기준 위원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붙임으로 되어 있는 결의안(대안)을 보면 주문에서 “둘째, 학생들이 쉼기향 향일 독립운동의 순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 기념일 행사를 교육부총리가 주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하나의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제안이유에 보면 일단 맞춤법이 잘못되었는데, “교과서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은” 이것은 틀린 말이고 ‘최근 일본의 우경화 경향으로 인한 교과서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수많은 외세의 외압 속에서’ 이렇게 해야 문장이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일본이 자꾸 우경화 방향으로 나가면서 주변국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외교관계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외교에 있어서 우리도 계속 불편한 상황으로 가게 하는 듯한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통쾌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웃 나라로 있을 텐데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저도 유기준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자는 것이니까 일본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이런 것은 다 삭제할 합시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래요.

○유기준 위원 제안이유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렇게 택했다 그러면 외교적으로는 어쨌든 유쾌한 결과는 아니지요.

○이인기 위원 그래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최규식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에 제안이유도 의결해서……

○입법심의관 김수흥 주문만 정부에 가고요……

○최규식 위원 그래도 속기록에 다 남지요?

○입법심의관 김수흥 예, 속기록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취지가 역사성이니까, 우리가 일본의 우경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그대로 받자는 것이니까……

○강창일 위원 이인기 위원, 유기준 위원 두 분 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주문의 첫째 있지 않습니까? ‘일제하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에서 ‘광주’자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독립운동의 의의

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인기 위원 그렇지요, ‘광주’를 빼야지요.

○강창일 위원 그 뒤 제안이유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이 되었던”이 있거든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발단이 돼서 전국적인 항일 학생독립운동이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11월 3일로 했기 때문에 ‘광주’자를 빼고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빼고 ‘첫째, 일제하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제안이유에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최근에 우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족주권 수호, 독립, 그런 것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히 불일 필요가 없습니다. 정 넣고 싶으면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라든지 독립의식 이런 것들을 넣는데,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어요. 최근의 상황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인기 위원 5페이지 마지막 석 줄은 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예, 빼도 상관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6페이지 첫 번째 문장까지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강창일 위원 그 뒤에 ‘이를 위한’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래요.

○유기준 위원 그 문장까지 빼 버리면 되잖아요?

○노현송 위원 현재의 우경화 때문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어 보면 우경화의 경향이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것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기준 위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이 있으니까……

○강창일 위원 그래도 계기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위험도 있고 하니까……

○노현송 위원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유기준 위원 6페이지 “현재의 학생의 날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만약에 위의 것을 뺀다면 거기도 가다듬어야지요.

○강창일 위원 조금 가다듬어 주세요.

○유기준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빼 버

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세 번째 문장을 다듬으시면……

○소위원장 우제항 전문위원이 문장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러면 유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문 내용 중 ‘둘째, 학생들이 쫓겨간 항일 독립운동의 순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 기념일 행사를 교육부총리가 주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행할 것’ 이 내용은……

○유기준 위원 먼저 왜 이렇게 반드시 교육부총리가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인기 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현행 규정에도 ‘학생의 날’의 기념행사는 교육부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총리가 안 하고 전라남도 교육감이 광주일고 강당에 와 가지고 광주일고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들만 행사를 하니까, 주문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문장을 넣어 주어야만 이제 이름도 바뀌었고 국가에서……

○유기준 위원 누가 주관하든지 간에 그것이 의미가 있나요?

○이인기 위원 의미가 있지요.

○강창일 위원 예산이며 모든…… 격 문제가 아주 중요하지요.

○이인기 위원 사실은 법령에 있는 대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렇게 하고 제안이유의 앞 문장 여섯 줄을 위원님들 취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광주에서 그날이 출발이 되어 가지고 광주, 전주, 진주, 이렇게 다 해 버렸거든요. 그것을 토털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니까 문장을 정리할 때 그것을 염두해서 쓰세요.

○강창일 위원 평양에서도 했습니다. 남쪽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대안을 가결하고 일부 체계 정리는 위임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대안으로 의결하고 체계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측, 수고하셨습니다.

6.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재오 의원 대표발의)(계속)

7.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8.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계속)

9.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5시15분)

○소위원장 우제항 의사일정 제6항~제9항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되어 왔던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위원님들께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이호웅 의원, 권경석 의원, 정성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지난 4월 18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 이재오 의원 대표발의안은 작년 12월 28일 전체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이 4월 19일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바 있고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5월 30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6일과 20일 각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개 법안의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호웅 의원안, 권경석 의원안, 정성호 의원안, 이재오 의원안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안 내용이 많습니다.

단지 이재오 의원안은 그 시기를 64년 3월 24일로 해 달라는 것 한 가지 사항입니다. 권경석

의원안도 한 가지 사항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의 실현 및’ 이것만 추가해 달라는 것이고요. 정성호 의원안도 ‘항거’라는 표현에 대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호웅 의원안이 중심이 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써 있는 내용은 그동안 대체 토론 과정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들을 수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수정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것은 이호웅 의원실에서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공개회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여기 정부 측하고 보좌관밖에 없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혹시 의견을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왜냐하면 제가 실무적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호웅 의원안과 정부 의견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입장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장 정용준 민주화보상지원단장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잠깐 기다려요.

지금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강창일 위원 공개로 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개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최규식 위원 오히려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최규식 위원 굳이 오해의 소지를……

○강창일 위원 저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 입장을 생각해서 혹시나 깊은 이야기가 안 나올까 봐 그런 거예요.

○유기준 위원 비공개로 하는 것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규식 위원 저는 굳이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비공개로 하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48분 비공개회의종료)

○소위원장 우제항 비공개 아니니까 보좌관들 들어오라고 해요.

1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의 지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지난번 위원회 전체회의 때 너무 많은 안건이 올라갔기 때문에 참고로 전체적인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요약해서 핵심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자치단체 출연연구원 관련된 개정법률안은 지금 시·도 출연연구원이 도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16개나 되는데, 이 출연연구원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는 데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감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출연연구원의 지원 방안 확대라는 측면에서 ‘출연금’이라고 표현된 2조의 규정을 ‘출연’이라고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혔고요. 두 번째로 이사장 선임 방법을 법상 이사회에서 호선하던 것을 정관에 규정을 해 가지고 외부 인사 영입 확대 등 자율성을 제고하는 8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조에서 시·도 출연연구원의 경영 성과와 연구 실적에 대한 외부 평가 근거를 마련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도 연구원에서 반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조

에 자생적으로 운영 중인 시·도 출연연구원협의회
회의 근거를 마련해서 연구원 상호간에 연구 교류
라든지 공통 연구라든지 또는 중복해서 연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교류협력 확대 기능을 활성화
하는 네 가지 내용이 이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심사 시에 대체토론은 없었고, 입법예고 시에
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별도로 쟁점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수석전문위원, 특별한 것 없
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
다. 이는 이사장 선임 방법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
한다 하더라도 과연 개정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관에 의해 객관적인 선임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좀더 설명을 들어 볼 필요
가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 내용이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호선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
도지사가 아주 당연히 이사장이 되어 버리고 맙
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이사장인 관
계로 해서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외부에서도 할 수 있
도록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인데 그것을 정관에 규
정할 경우에 역시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
도지사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보다
개선된 쪽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런 우려가 있으면 법안에
넣어 버리면 되지요.

이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원 자체의
성격이 확 달라질 수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런데 그
것을 법문에다가 특정해서 위당을 하기가 어렵습
니다. 법 문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지적하
신 내용을 기술적으로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인기 위원 현행 법 제8조1항으로 몇 년을

운영해 왔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새로 만들
어지는 연구원이 이것에 의해서 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이인기 위원 20년 넘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정확하게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사
장을 그런 식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번에 ‘독립성’이라는 말을 써서
바꾸려고 생각하시는데 그전에는 이런 시도를 안
했습니까? 이사장을 호선하는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것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저희들이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이번에 특별히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인기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누가 지적합니
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사장은 시·도지사가 하지만
원장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습니
다.

○이인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김정권 위원 원장이 다 주관하고 이사장은 형
식상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기는
한데……

○소위원장 우제항 솔직히 말해서 이사장이 원
장 임명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이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대개 시·
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이 많이 존중
이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역시 법에서 열어 놓으
면……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외부 인사
가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좀더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행정지도할 자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정관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
니다.

○김정권 위원 이것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반
발을 안 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자치단체에
서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반발

은 없는데 평가하는 부분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쪽에서 외부 평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기주의적인 것이지요. 평가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인기 위원 이사장 선임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시·도지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시·도에다가 입법안을 쥐 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시·도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러면 원안대로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다른 위원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4항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6.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5시57분)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주요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이 안건은 이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과 정부가 제출한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대체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신 요지는, 첫째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기 의원안처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2호 경비·요인경호 및 동조 제4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포함시

키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공무원의 범위에 영구 장애자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의 경우에 즉사가 빠져 있다는 지적 및 119구조단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으로서 종전에 사망 시 지급하던 각종 일시금 내지 부가금이 이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유족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유족보상금을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호·경비 및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수행업무 담당 경찰 공무원의 포함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정부 측에서 제출한 법안이든 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안이든 간에 “그 밖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라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조항을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시를 하더라도 문제없는 사항입니다. 가목부터 카목까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놓은 것인데 이 의원님 말씀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영구 장애자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장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애 상태로 퇴직했을 경우에 퇴직급여 외에 장애연금이나 장애보상금을 병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으면 보수월액의 80%가 지급이 되어서…… 이번의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한다면 20년 이상 자도 65%를 주는데 기왕에 장애연금 80%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새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공무원 상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연구를 통

해서 이번 신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재해보상제도를 개선할 때 혹시 장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더 연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발의자인 이인기 위원!

○이인기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한 직무에 근무하는 10만이 넘는 공무원들의 신분도 보장해 주고 사기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대간첩작전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김신조 사건이 난 이후에 대간첩작전으로 사망한 사건들이 없거든요. 조문의 형식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 구체적으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공무원들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20명에 불과하고 연간 2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데 72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경찰청에서 나온 사람 있으면 앞에 앉아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제가 나머지 정부 측 의견을 전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순직공무원 범위와 관련해서 세 꼭지였는데 두 꼭지만 말씀드렸고, 유기준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하신 즉사가 빠져 있다는 문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문제는 전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 들은 것이니까 간단히 하세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즉사가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망 시기가 언제든 간에 즉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든 법률안이나 이인기 위원님이 제출하신 법률안이나 간에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는 당연히 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법에서도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구조단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해서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제 유기준 위원님께서 종전에 사망 시 지급하던 각종 일시금 내지 부가금이 이 법률에 따르면 정부 입법안이나 이인기 의원님 안이나 간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족들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선택할 경우와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연금을 선택할 경우를 따져 보면, 가령 20년 재직자는 1년 7개월만 연금을 받으면 부가금보다 연금이 액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30년의 경우에는 3년 9개월을 수령을 하면 연금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 입법안이나 이인기 의원님 안이나 간에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받고자 하면 순직한 경우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 자체가 선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가지고 공무원연금법으로 받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1년 7개월 내지 3년 9개월만 수령하면 돈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해서 건강 상태상 내가 오래 못 산다면 연금법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선택은 신청 주의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직유족보상금에 대해서 정부안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에 이른 경찰공무원에 한해서 총경 10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72배를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36배의 순직유족보상금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인기 위원님께서서는 전부 다 72배를 주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대간첩작전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군과의 형평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테러작전도 대간첩작전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전사 취급을 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서는 별도로 전사에 한해서만 72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툰부대가 파병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투부대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사 취급을 못 받고 일반 순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법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참

고로 군인연금법에서 국방부가 의원입법 방식으로……

○소위원장 우제항 잠깐만요, 자이툰부대가 어떻게 죽었을 때 전사 처리를 합니까?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자이툰부대는 전투과병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망에 이르면 일단은 전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노현송 위원 그냥 순직이예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예.

○소위원장 우제항 순직이면 몇 배 받는 것이예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36배만 받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외국인 테러에 의해서 죽으면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마찬가지로입니다. 군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가지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50억 정도의 연금 재정을 세이브하고 있는데 국방부 측에서 지급정지제도를 60세 이상에 한해서만 하자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방위 법안소위에 가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일정한 부분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정지하는 것을 군인은 나이에 따라서 해 주면 공무원연금법의 정신과 전혀 안 맞고, 사학과 공무원은 같이 가는데 군인만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대다”라고 해 가지고 국방위에서 보류 상태로 법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말이 맞는데 지금 하고 있다고……

이 건은 만약에 우리가 일반 순직자에 대해서도 72배를 주는 형식으로 해 버리면 군인연금에서 당장 문제가 크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거……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찰의 업무는 다양하잖아요. 소방업무는 크게 나누면 소방하고 인명구조 두 가지인데 100%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경찰업무는 수사 업무하고 테러업무만 들어가는데 사실 직무 관련

해서 교통순경들이 길에서 위험을 많이 당하는 게 신문에 많이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찰이 시위대에 맞아서 엄청나게 다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건 참 난센스 아니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인기 의원이 낸 안을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이툰부대 가서 순직해도 36배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72배는 조금 무리가 되니까 36배보다는 약간 좀 올려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보자고요.

36배를 꼭 고수해야 돼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지금 36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순직 유족들에 대해서……

○소위원장 우제항 그건 위험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36배 받는 거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예.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니까 위험직 공무원은 36배보다 더 받아야지요. 72배까지는 못 받더라도……

○노현송 위원 군인은 얼마 받아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전사의 경우는 빼고 나머지는 36배입니다.

본래 저희들이 36배와 72배의 중간인 54배로 당초 안을 냈었습니다. 기획예산처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20년 미만자에 대해서 없던 연금을 순직유족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주는데 여기다 덧붙여 가지고 순직유족보상금까지 그렇게 많이 올려 주는 것은 공무원연금 재정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잘못하면 국민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따라서 행자부가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인데 만약에 이제 와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부처 간에 신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것 때문에 군인연금법과 사학연금법까지 다 고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없는 연금을 새로 만들어서 위험직무 관련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는 그것으로 일단 하시고 나중에 국가재정을 보면서……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2억까지 추가로 지급을 받습니다.

○최규식 위원 지금 정부가 말하는 기준이 무엇의 36배지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당해 공무원 보수월액의 36배입니다.

○**김정권 위원** 사망 당시의 그 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최규식 위원** 그런데 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36배면 어쩌냐 이거예요. 절충으로……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저희들 스스로가 공무원인데 제 스스로 이 법안을……

○**소위원장 우제항** 50 먹어서 총경 달고 죽은 사람은 얼마 못 살지만 20살에 순경 달아 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3100만 원만 받는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니예요?

○**이인기 위원**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안 그러는데, 통계 나온 것 보면 1년에 범인 피격 6명……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경찰청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국가채정 전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36배로 하되, 사망 당시 공무원 보수월액으로 하지 말고 총경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타협안이 될 것 같지 않냐 이거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경찰청에서 나온 단장, 희망사망을 얘기해 보세요.

○**경찰청혁신기획단장 송강호** 경찰청의 혁신기획단장입니다.

방금 자이툰부대는 전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전사로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판례라든가 정립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자이툰부대는 명확하게 전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쟁 치르는 그것은 명확하게 전사입니다. 이걸 행자부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법제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소위원장 우제항** 그게 판례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경찰청혁신기획단장 송강호**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우제항** 그렇다고 해서 행자부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경찰청혁신기획단장 송강호**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전사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의견 개진해 봐요.

○**경찰청혁신기획단장 송강호**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10월 27일부터 한 3회에 걸쳐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해서 명예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지시도 하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찰 전체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경찰의 경우 숫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간 한 20명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4인밖에 안 됩니다. 위험직무라는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FECA(연방직원재해보상법)이나 PSOB(공안관보상법)에 의해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1억 8000 정도의, 그러니까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보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런데 위험직무에 관련된 경찰이 군인보다 능가하면 곤란할 거예요. 군인보다는 덜 받고 일반 공무원 순직의 경우보다는 더 받는 이런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군인은 전사의 경우에만 72배를 받고 있고……

○**소위원장 우제항** 어떤 계급의 72배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소령입니다.

○**이인기 위원** 내가 정리할게요.

사실은 군인도 지난번 서해교전 사태를 계기로 해서, 20살 먹은 장병들이 죽었는데 3000만 원 줘서 되겠느냐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이 법을 손대 가지고 이삼 년 전에 처음으로 72배로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의 경우 20명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총경의 72배라면 23억, 54배라면 13억이라는 돈이 나오네요. 우리가 차관 1명 늘리면 1년 예산이 최소한 2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도 이렇게 인상했듯이 시대의 변화와 국가의 재정규모를 봐서 경찰·소방 순직공무원들도 밸런스를 같이 맞춰 주는 게 맞습니다.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공무원들이 자기들 복지를 위해서 스스로 막 올려 준다면 국민 여론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군인은 전사의 경우에만 소령 봉급의 72배를 주고, 나머지 순직의 경우에는 당해 본인이 받은 봉급의 36배만 주

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범인 잡다 순직하는 경우나 교통정리하다 순직하는 경우, 데모 막다 순직하는 경우는 사무실에서 과로로 순직하는 경우와는 구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현행은 그냥 다 순직으로 처리된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범인 잡다 죽는 경우도 있고 당직 서다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 순직하는 거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거지요. 경찰관은 범인 잡는 게 전쟁이고 도로에 나가서 교통정리 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순직할 때는 현행법에 의해서 그대로 당해 보수월액의 36배를 주되, 다만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체포하다가 죽거나 하는 경우에는 군인마냥 전사의 개념으로 봐 가지고 그것은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창일 위원** 그런데 군인하고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군인 장교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일반 병사의 경우는 월급 자체가 3만 원, 4만 원 아닙니까? 때문에 소령 기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경우는 순경 때부터 정상적인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법률의 연혁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에 보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때의 일급—하루 급료—의 1000일분을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하고, 120일분을 장제비로 해 가지고 1120일분을 지급합니다. 그게 합쳐지면 약 한 30~35배 정도 되거든요. 그게 기준이 돼 가지고 정부안에 이게 나와 있는 건데, 과격적으로 72배 정도까지 한다고 그러면 다른 법과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이게 원래 근로기준법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어느 게 적절한 건지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내년부터 전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되는데 경찰공무원들의 경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저런 거 다 빼고 2억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배로 했다가 국가재정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알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그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맞춤형 복지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현직 공무원이 순직했을 때보다 순직공무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 더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찰청혁신기획단장 송강호** 복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한테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일정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경찰공무원들은 그것을 받아서 안 쓰고 10만 원씩 모아서 보험을 들어서……

○**이인기 위원**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서 소방공무원이 불 끄러 갔다가 죽었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보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 전 부 전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순경은 5000원, 그 위는 1만 원, 또 그 위는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6000만 원 가까이 모으던데, 우리가 지금 12위의 경제대국에 살면서 29살 먹은 아들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그 직원—동료—들한테 5000원씩 걷어 가지고 주는 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노현승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기획예산처하고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그렇고, 군인하고의……

○**노현승 위원** 군인은 72배라면서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전사의 경우에만……

○**노현승 위원** 전사의 개념은, 경찰에 전사가 어디 있어요? 전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사에 준하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인 잡다가 죽거나 또는 데모를 방지하러 나갔다가 맞아서 죽거나 그런 것은 전쟁에 준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전사에 준하는 거니까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바로 그런 점 때문에 20년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없던 연금제도를 만들었지 않느냐……

○**노현승 위원** 그러면 그 연금은 누구나 다 해당되게 되어 있어요?

○**경찰청혁신기획단장 송강호** 그 점에 대해서는 군인의 경우는 모든 순직이 다 해당이 됩니다. 20년 미만의 경우에도 자기 사무실에서 죽으면 100분의 55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경우는

위험직무가 아니면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100분의 55를 받는 유족연금의 경우는 한 20명 정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균하고는 완전히……

○**노현송 위원** 그리고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경 10호봉의 72배로 하면 연 23억, 36배로 하면 9억, 54배로 하면 연 13억이에요. 그건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1년에 1명도 안 나올 수도 있고, 3~4명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과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직에서 봉사하는 공무원들한테 국가가 이런 것도 못 해 주면 되겠어요?

○**이인기 위원** 부처 간의 신뢰만 중요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아까 행자부 측에서 얘기한 신뢰 문제는 정부 예산이 어려워서 이렇게 물러선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54배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다는 뜻이니까……

○**노현송 위원** 행자부에선 반대지만 여기서 의결한 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그리고 지금 총경 10호봉이냐, 54배를 주느냐 하는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 논하는 게 어떻겠어요?

○**강창일 위원** 이 숫자들이 좀 자의적인 것 같아요. 아까 사병의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소령으로 맞춰서 했는데, 그 7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유기준 위원** 36을 보통 지급하는데 전사의 경우는 그 2배를 주는 걸로……

○**강창일 위원** 그러면 36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유기준 위원** 근로기준법의 1000일분이 36입니다.

○**강창일 위원** 또 54는 어디서 나왔느냐는 이런 문제도 걸린다고요. 그리고 총경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어요? 순경은 월급을 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청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얘기를 좀 더 듣든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 9월부터 해서 15개월이 지났는데, 예산이 1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들어가는데 이것도 결단 못 내린다면……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위원장님, 경찰공무원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이상 참여를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이해당사자이지만 국회의원이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론지상에 보면 전투기조종사들의 사고가 자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일반 순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전투기 조종이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순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 위원** 그건 부적합한 비유예요. 경찰공무원도 직무상 경찰차 운전하다가 사망하면 그냥 순직이에요.

○**소위원장 우제항** 이건 다음 소위원회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연히 36배냐, 72배냐, 그 중간인 54배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이게 결국은 경찰공무원의 순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군인연금법을 단순히 따라가기 어려운 게, 군인연금법에는 전사의 범위도 굉장히 좁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강도가 좀더 크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연히 그것과 같은 카테고리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상금의 산정기준도 군인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소위원장 우제항** 이건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군인이 전사하는 건 드문 일이고……

○**유기준 위원** 예, 그리고 나라를 위한 희생의 정도가, 아주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 군인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령 10호봉의 72배’로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 굉장히 큰 희생에 대한 보상인데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떨지 하는 생각입니다.

○**최규식 위원** 그래서 똑같이 안 했잖아요.

○**유기준 위원** 그래서 그 범위를 조금 합리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사망당시에 경사든 경위든 순경이든 일단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배로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몇 배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한번 정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행정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경찰청에서도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내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행정부처에서 나온 사람끼리 반박하거나 이해당사자끼리는 내가 얘기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결례되는 행위라는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되 다음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발의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오래된 법이고 하니까 또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그때는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해야지 또 그냥 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안 듣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에 법안소위원회를 할 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순직공무원 범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양보할 것은 하시고……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범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양보했지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이인기 의원님 안대로 포함시키는 것은……

○노현송 위원 보상문제는 다시 한번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보세요.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정부 측에서도 이인기 의원 안한테 양보를 했으니까 이인기 의원도 정부안에 양보 좀 해야지.

○행정자치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어요.

다음 법안소위할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법안소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원 발의)

(16시39분)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제항 소위원장, 최규식 위원과 사회교대)

먼저 대체토론 요지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교부세를 지방교부세법에 규정하는 것은 교부세의 성격에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교부세 법률규정화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의견과 다음으로 부동산교부세 예산액과 결산액 차액 발생에 대한 정산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셨고요.

특이사항은 지난번 제안설명할 때 노현송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라는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지방에 이양한 결과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권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인상해야 된다는 수정 동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심사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장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특이사항으로 지금 보고된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지방에 이양한 결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담배소비세 인상 증가분으로 대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현행 0.83%에서 0.11%포인트를 인상해서 0.94%로 인상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부동산교부세 관련 사항을 지방지원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에 대

한 보전과 그리고 보전하고 남는 재원을 가지고 지방에 균형 재정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으로 가게 하는 장치가 바로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동산교부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정산 필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하고 국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선행조치로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후행조치로서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경위하고 보조를 맞추든지 아니면 재경위에서 심사가 끝나고 통과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노현송 위원 관계없어요. 그 문제에 관해서만 우선 이야기를 하면 이미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세금을 거둬요. 내일 12월 1일이 되면 신고를 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것은 좋은데 수석전문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경위에 상정되어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든 안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지난번 법에 의해서 종부세를 거둬 가지고 이것을 교부를 해 줘야 된다고요.

○유기준 위원 종부세가 그렇게 돼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과세기준에 대해서 주택을 9억에서 6억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또 나대지는 어떻게 하고 또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어떻게 하고 이것이 아직 마련이 안 돼 가지고……

○노현송 위원 그것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기존의 법에 의해서 걷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기준 위원 여야 합의에 의해서 걷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현송 위원 관계가 없다가, 그것이 설사 통과가 안 돼도 작년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은 것은 교부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유기준 위원 그것은 관계가 없다…… 전문위

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미 거둔 것을 가지고 교부를 한다…… 그럼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이 좀 달라지겠네요.

○노현송 위원 그렇지, 그것만 달라지는 것이지.

○유기준 위원 또다시 건어야 되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렇지 않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반영되면 또다시 개정해야 되고……

○노현송 위원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준 위원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노현송 위원 보전해 주는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 방법은 똑같은 것이지요.

○유기준 위원 그 비율이 지금 1만분의 191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현송 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예요.

○입법조사관 정순임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자체를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총액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설명을 드리자면 재경위원회에서 걷는 것은 얼마만큼을 걷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 지방교부세법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얼마가 걷히든간에 지방에 전액을 다 준다, 어떤 방법으로 준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4조제1항의 “1만분의 1913”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요.

○행정자치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그것은 종합부동산세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것은 분권교부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강창일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지방교부세법 개정법률안이 노현송 의원님 이름으로 제출되어 있지요?

○노현송 위원 예.

○강창일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행자위에서 수정 동의낸 것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킵시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이것은 설명한 대로 종합부동산세 개정하는 것과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유기준 위원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법안심사할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재산세는 전부 종합토지세나 건물세나 할 것 없이 원래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일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국세로 전환해 가지고 나라가 받아서 다시 지방에 주는 그런 간접적인 교부세로 취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지책으로 이런 법들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그 의견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지요?

○유기준 위원 예.

이미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반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지금 수정 의결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종합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지금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정 동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0.83에서 0.94%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정 동의 내용과 저희가 작성한 수정 의견—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동의 내용과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地方稅法 一部改正法律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

24.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

표발의)

25.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채수찬 의원 발의)

26.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7.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8.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29.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16시50분)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제23항~제29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전체회의 대체토론 시에 제기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은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구 의원안, 이혜훈 의원안, 채수찬 의원안, 김효석 의원안, 윤건영 의원안, 윤건영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제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등록세·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한 재원 보전 대책, 다음 보유세 강화 타당성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등록세·취득세 세율 인하율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총 세수 증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과, 이혜훈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은 병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취득세·등록세 인하 사항, 각 개정안을 비교했습니다.

각 의원안에서 취득세·등록세를 어느 정도 인하할 것인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취득세가 2%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도 2%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유상 주택 거래일 경우는 1.5%로 되어 있고, 적용 대상 범위는 모든 부동산거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열린우리당을 대표하는 채수찬 의원안을 보면 현행 2%를 1.5%로, 1.5%를 1%로 되어 있습니다. 각 0.5%포인트씩만 인하한 내용이 되

겠습니다.

김효석 의원안은 취득세는 1.5%를 인하하여 0.5로 만들었고 등록세는 1.5를 1%를 낮추어서 0.5로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안은 취득세는 언급하지 않고 등록세는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 경과조치로서 2006년, 2007년, 2008년 기간을 뒤서 폐지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안은 취득세를 2%를 1.5%로 하자는 의견이고, 이종구 의원안은 개인 간 주택 거래의 경우에는 1.5를 1.125로, 기타 부동산 거래는 2%를 1.5%로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최규식 이혜훈 의원안에서 등록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내용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 개정안에 따른 변동 내용을 3쪽에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표적용률을 현실화하는 채수찬 의원안과 윤건영 의원안이 있는데요, 과세표준을 보면 채수찬 의원안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점진적인 인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적용 비율은 2006년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2005년 현재는 100분의 50인데 2015년에는 100분의 100이 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 비율로 하고 다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2006년, 2007년은 동결하고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안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토지·건축물·주택 모두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의 적용률 100분의 50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서 2015년에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율 인하에 관한 사항은 이혜훈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에서 과표구간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 측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개

정안을 내놓으셨는데 당론으로 정한 안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유기준 위원 채수찬 의원안이 열린우리당하고 정부안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채수찬 의원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야 좀 논의가 쉬운데 한나라당에는 몇 분이요? 각각 내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토론해야 될지……

(최규식 위원, 우제항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노현송 위원 공통점을 찾아내면 돼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금 나누어 드린 것이 세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영향까지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거래세 인하 부분입니다.

이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말하는 것인데 먼저 채수찬 의원님 안을 보면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0.5%씩 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방세가 이것으로 해 가지고 1000~2000억 원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채수찬 의원님 안은 개인 간 거래이고요. 이종구 의원님 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등록세를 0.5% 일률적으로 인하하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세수 결함은 약 7000~80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혜훈 의원님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를 0.5% 내리자 하는 안인데 이것도 약 7000~8000억 원 감소 예상이 되고요. 윤건영 의원님은 등록세에 대해서 4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아주 폐지하자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06년부터 매년 1조 5000억~1조 6000억 원이 감소되고 07년부터 09년까지는 매년 2조 원 정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김효석 의원님 안은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 각각 1.5%와 1%를 낮추자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지방세가 1조~1조 1000억 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증가되는 증수분이 대개 5000~6000억 원 정도로 봅니다.

두 번째로 보유세 강화 부분입니다.

보유세 강화 부분은 현재 재산세 과표 적용이 50%인데요, 대개 5%씩 변화시키자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채수찬 의원님은 내년부터 토지는 5%포인트씩 올리고 주택에 대해

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올려서 100%까지 가자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 06, 07년은 1750억 원 세수 증수가 예상되고 08년 이후에는 270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의원님 안은 현재 50%를 매년 5%씩 100%까지 토지하고 주택을 나누지 말고 그냥 가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2700억 원이 증가하고요.

이혜훈 의원님 안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0%를 인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하가 되기 때문에 약 909억 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님 안은 토지 및 주택 과표 구간을 지금 3개 구간인데 5개 구간으로 해 가지고 세율을 인상하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대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추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 세수의 36%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세목입니다. 그것이 돈으로 하면 12조 원이 됩니다. 반면에 재산세는 그것의 4분의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세 완화, 보유세 증가라는 것이 등식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세를 4~5배 인상을 해야 거래세 1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세 인하할 경우에 지방세 결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 살림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8·31대책을 하면서 실가과세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보유세가 증가되는 범위 내에서 거래세를 낮추자,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방세에 결함이 없도록 한다 하는 원칙이 서 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채수찬 의원님 안을 만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일 위원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얘기했는데, 법인 간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금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하는 논리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아닌 주택 거래,

법인 간 거래라든지 처음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사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10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0만 원을 다 신고하지 않고 대개 900만 원으로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간 거래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로 해도 충격이 적은데 개인 간 거래로 하던 것을 실거래가로 하게 되니까 충격이 대단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완충장치를 두자 하는 차원에서 거래세를 좀 낮춰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부동산 거래를 낮춰 줄 경우에는 강화된 보유세만으로는 도저히 충당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개인 간 주택 거래로 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거래가 과세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법인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다 이거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강창일 위원 그리고 세율 인하는 것은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인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충격을 줄여 주기 위해서……

○강창일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법인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보존등기를 하고 나서 분양자한테 이전등기를 하잖아요. 그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데, 만일에 법인이 첫 번째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전받아서 다시 개인한테 파는 경우라면 그건 개인끼리의 거래하고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아닙니다. 아파트업자가 법인이거든요.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법인이 아파트업자가 아니고…… 아파트가 분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어떤 법인에 팔았다, 그건 아파트건설업자도 아니고 분양업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 가지고 자기 회사를 거기에 채우고 이렇게 하다가 일

반 개인한테 또 파는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 간의 거래하고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아닙니다. 현행 세법이 법인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인 간의 거래도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다고요. 그건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그렇게 여러 번을 걸친 거래에 있어서 중간에 법인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개인’만으로 해 두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되는데 법인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문중의 거래 같은 경우는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신고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개인 간 주택 거래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노현송 위원** 문중 간 거래도 개인 간 거래로 본다는 거지요.

○**유기준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다수 대 개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법인에서는 과세가 바로 공개가 되거든요.

○**유기준 위원** 그러면 비법인 간 주택 거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군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과표를 점점 시가로 반영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공시지가가 별도로 있고 그 공시지가를 점점 시가로 맞춰 가는 방향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정당하게 시가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국민적 저항이 있지 않을까, 또 과연 그렇게 반영된 시가가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계속해서 신고한다고 그

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서라는 게 적어도 1세대~2세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형성된 건데 갑자기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세제도를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는 건데…… 옛날 왕조시대 때 조세개혁 해 가지고 왕조가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거의 조세개혁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 법에서라기보다도 이미 이전에 실거래를 적용할 때부터 조세개혁이 된 것이거든요. 실거래가로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로 그때 굉장히 큰 조세개혁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번의 것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세 부분은 과표로 과세를 하고요, 거래세 부분은 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거래가격으로 과세를 할 때 실거래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가지고 실거래가를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자발적인 협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공모해 가지고 그 금액을 낮게 신고하자고 하면 낮게 신고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유기준 위원** 국민이 자기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적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니까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런데 저희가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다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파는 사람이 낮게 해 주면 다음에 팔 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둘이 공모해서 낮게 신고하고 나중에 파는 사람한테 세금 부담은 별도로 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차액이 커지게 되고……

○**유기준 위원** 우려되는 것은, 거래세를 인하고 법인세를 강화하면서 조세개혁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침체된 것을 좀 세

워 일으키고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호도를 하는데, 결국 조세개혁의 종착역은 국가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데 귀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거래세를 인하하면 얼마의 세수 절감이 있고 보유세가 강화되어도 얼마 정도 세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앓는 소리를 하지만 시행해서 한 30년 지나고 보면 결국은 국민 부담이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런데 사실상 그대로 놔두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낮춰 줌으로 해서 부담을 전과 똑같이 만들자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중심 되는 내용입니다.

○**노현송 위원** 그냥 놔두면 더 부담이 커지니까 하자는 얘기예요.

○**유기준 위원**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로 있던 재산세 부분을 당겨서 국세로 바꾸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정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중앙집권체제를 좀더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노현송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강창일 위원** 유 위원님 말씀은 종합부동산세를 할 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고,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세수 부담을 좀 덜 주자는 의미에서 감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채수찬 의원안이라기보다는 정부안인데, 이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부담도 적게 하면서 제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유기준 위원** 이걸 거래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보유세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해서 우리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나 정조위원회하고 좀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현송 위원** 다음 법안소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유기준 위원** 가능하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맞춰 보는데 의견 수렴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정부 측에서도 괜찮겠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이걸 지금 재정부에서도 안을 논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넘어가지 않도록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그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

거든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정부 측 의견도 금년 안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기준 위원이 제시한 대로 당내 의견조율을 하고 다음번 법안소위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이 낸 안을 종합해 보면 채수찬 의원님 안이 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은 정부 측 오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우제항**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 國家公務員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地方自治團體에두는國家公務員의定員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우제항 의원 대표발의)

21. 責任運營機關의設置·운영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소위원장 우제항** 의사일정 제1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항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21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대체토론 시 제기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일괄상정을 하셨습니다. 마는 회의 진행상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 요지만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급제의 폐지로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정실인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시행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

의 임용제청 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용제청권자와 충돌할 경우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협의권 행사가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매 5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할 경우에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보직 2년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년은 너무 길며, 동 제도가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일단 정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사무처장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위공무원단 도입 시 공직사회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정실인사가 우려된다, 그래서 공무원사회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어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직업공무원제도와 관련되는 규정은 개정함이 없이 현행 그대로 존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기반 위에 도입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간 이 제도를 연구하고 검토를 하면서 전 공직사회에 홍보를 했고 또 설명회도 갖고, 그간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반 이상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반대하는 경우는 10%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개방형이나 직위공모 그런 경우는 공개방식에 따라서 임용이 되고, 또 각 직위에 대해서 직무수행요건이나 자격요건이 설정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정실로 임용되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 철저히 예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개방형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부처 간 국장급 인사교류라든지 직위공모제도 또 직무성과계약제 이런 것을 사실 몇 년 동안 시행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이 제도가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고 일부는 점진적으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잘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인사위의 권한과 관련해서 임용제청 시 중앙인사위가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데 임용제청권자와 의견 충돌 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어제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급 이상 공무원 임용절차는 앞으로 현제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3급 이상은 임용제청권자가 올리면 중앙인사위를 거치고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있고, 기관 간 전보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는 그대로 가는데,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명을 할 때는 타 부처 소속에 있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임용제청권자가 자기 부처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하면 임용하고자 하는 그 소속 장관의 뜻과 오고자 하는 그 사람이 동의를 해 줘야만이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없으면 기본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현재 A라는 사람을 B부처로 옮기려고 하는데 A가 근무하고 있는 부처의 장관이 '나는 이 사람은 빼줄 수 없겠소. 이 사람은 내 부처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니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도 우리 부처에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인사위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양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조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개입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 절차는 현재 법정 절차이고 필요 경우 절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제와 관련해서 매 5년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시행령에 과연 어떻게 규정할 것

이나라는 질의가 계셨고, 또 무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면 이걸 너무 길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제도가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이런 상반된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헌법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그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위헌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종으로 봐도 검사라든지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현재 2급 이하에 대해서만 신분보장을 하고 있고 1급은 현재 신분보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직종과 그 직급, 직위에 대한 특성을 일부 반영하여 국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이게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뭐냐고 어제 질의가 계셨는데, 그 사항은 법률에 규정이 되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될 겁니다. 법률 규정에서는 위원장은 중앙인사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됩니까 마는 차관급 공무원이 1~2명 들어가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1~2명 들어가고, 민간 전문가가 절반 정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무보직 2년은 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까마는 무보직 2년은 연속된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 실·국장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위공무원단직에 근무하면서 무보직 자투리를 모두 합해 누적 합산한 개념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분보장 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직업공무원한테 2년보다 짧은 1년으로 무보직기간을 설정해서 직권면직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도입 초기에는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위해서 이렇게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게 몇 조치요?

○중앙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체도실무추진단장 정하경 제70조의2제5항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7항에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운영에 대해서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에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체도실무추진단장 정하경 그 내용은 제70조의2(적격심사)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적격심사의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어떤 때 적격심사를 받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2항에 보면 실시시기가 나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여태까지 이런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무조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입법권 침해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중앙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체도실무추진단장 정하경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 같은 그런 사항만 위임사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제대로 됐네요.

이인기 위원이나 유기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유기준 위원 제가 보니까 적격심사 할 때 상세한 심사기준이 별도로 규정이 있던데요. 판단 기준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그다음에 어디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될 여지가 있어 가지고 좋은 뜻으로 제도를 출발시켰지만 악용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앙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체도실무추진단장 정하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문 바로 앞에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해 가지고 각호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이게 결국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공무수행이 곤란한 자, 그다음에 어디에 해당하는 자 이 두 가지 정도인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적격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가면 위험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좀더 상세히 규정할 수 없을까요?

○**중앙인사위원회고위공무원단체도실무추진단장 정하경** 지금 두 가지 요건이거든요. 하나는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무보직기간의 문제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넓힌다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신분보장이라는 직업공무원제의 기반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하게 ‘근무성적평정이 지극히 불량한 자, 무보직기간이 상당히 긴 자’ 중에서만 위원회가 판단해서 부적격자를 결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합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70조의2제7항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체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적격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너무 기준이 모호해서……

○**소위원장 우제항**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성패 여부거든요. 혹시 고위공무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적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의 소지가 있으니까 대상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최규식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으면 찾지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지금 현재 상당히 객관적으로 수치화되어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7항에 그런 기준까지도, 법령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3항을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조문 작성을 해 봐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유기준 위원**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고위공무원단체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예.

○**유기준 위원** 이유가 뭔가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행자위에서 내년 예산 증액을 삭감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법률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액을 하느냐……

○**유기준 위원** 여기서 만일 ‘예산도 없는데 법안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서로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그것은 행자위 법안 심사할 때 제가 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 법안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면……

○**유기준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법률안을 만들어 줘야 예산이 편성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중앙인사위원회사무처장 정택현** 예, 예결위의 입장은 행자위원회에서 법만 가결해 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

○**소위원장 우제항**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진지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좋게 하는 방향으로……

○**중앙인사위원장 조창현**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셔서 그 내용까지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법안을 만들겠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나머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리고 이 법이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국회 심의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칙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일자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7월 1일로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에 제시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자구·체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4~15페이지에 역량평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정안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의’ 이렇게 표현하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한다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법문상 마치 능력과 자질을 평

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평가하여’ 이런 식으로 체계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채용 관련 규정에 보면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단체도를 도입한 후에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행정부 고위공무원단으로 특별채용은 가능한데 반대로 행정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이 국회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그쪽으로는 특별채용하는 데 곤란한 문제가 있거든요. 양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개정안 표현대로 하면 행정부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행정부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이 행정부 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갈 수가 없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행정부 고위공무원단은 쌍방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최규식 위원** 이 앞의 조항은 전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입법조사관 김수흥** 법을 고칠 때마다 종전에는 한문으로 해 온 법을 한글로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유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문대비표 44쪽이 되겠습니다. “적격심사는 근무성과와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의사일정 17항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일부 자구 정리와 시행 시기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 수정과 그 시행 시기는 위원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18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18항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창일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지적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 관련 사항입니다. 고위

공무원단체도를 일시에 도입할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부문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고위공무원단체도와 팀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을……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조직혁신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위공무원단체도 도입 시에 부문별로 분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도를 도입할 때 행사부라든지 인사위, 관계 부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체도를 디자인한 것이고요. 고위공무원단체도를 도입하는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조직법에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고위공무원단체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직법에서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아닙니다. 이것 역시 시행시기를 1월 1일로 했기 때문에 7월 1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시행 시기만 7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대체토론 요지입니다.

이 내용은 부산소방학교 신설과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산소방학교의 관할구역, 인구, 관할 소방서, 교육 대상 인원 등을 고려해 정원을 너무 적게 책정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기준 위원** 비공무원 숫자가 더 많은데, 왜 더 적게 채용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그것은 어제 청장이 답변한 대로 일단 신설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관리인력으로 출범하고 강사 등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력 보강 문제는 향후 교육 수요, 업무량을 감안해서 추가로 고려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현승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나중에 충원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현송 위원 상황을 봐서……

○유기준 위원 부칙, 시행 시기만 정하면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 해당 조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등’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이 규정만 7월 1일 적용하도록……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유기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만 수에 비해서 안 된다면 곤란하니까요.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행 시기만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20항, 21항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제항 위원장님의 위임입법 금지 관련 사항입니다.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대폭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이 재정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방대하게 운영하지 말고 지정 여부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국가업무의 공공성 약화 및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우제항 의원안이 1년 전에 제출되었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예, 그렇습니다.

○노현송 위원 이거야 시행령을 법률로 고치는 것이니까……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발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쪽에 반영해서 저희가 작성했고 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대로 더 추가해 가

지고 저희가 수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러면 발의한 우제항 의원이 정부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방금 전에 한 인사위원회법도 지금 추세가 입법권 침해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전부 위임하는 추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 수용한다고 그러니까 뭐 더 할 말 없습시다.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그러면 저희가 대안으로……

○소위원장 우제항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허청이 여기 들어가지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예.

○소위원장 우제항 특허청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전화했는데, 시행 시기를 5월 1일로 당겨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그것도 부칙 조항 관련인데요. 지금 이것이 원안에는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 단위 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관련은 2006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관련된 사항은 2006년 1월 1일……

○소위원장 우제항 그것 7월 1일로 바뀌었어요..

○행정자치부조직혁신단장 이창구 그래서 청 단위 기관의 책임운영기관화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하는 것은 5월 1일로 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지요?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부칙 조항은 7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기관에서는 5월 1일로 하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중 일부 개정에 대해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은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하고……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3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이재창 의원 대표발의)

32. 주한미군이전에따른반환공여지역발전을위 한특별법안(김병호 의원 대표발의)

(18시10분)

○소위원장 우제항 다음은 의사일정 30항~32항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심사경과 등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가 문희상 의원안, 이재창 의원안, 김병호 의원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작성하셨고, 조정안은 정부와 협의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초안으로 조정안을 작성해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안건들은 지난 2월 21일 임시국회에서 상정했습니다.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관련 사항이 많아서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다른 부처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정부 측 입장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측으로부터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제출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8월 26일에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정부 측 의견과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 통합하여 만든 내용이 조정안 심사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시 참고자료라든지 쟁점사항 몇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했는데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먼저 이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 측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조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정부 측의 답변을……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방지원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자위 조정안은 정부와 합의된 것입니다. 즉 정부에서 국무총리실과 행자부와 국방부가 주 관련 부처입니다. 이 3개 부처가 전부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이 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반환공여지의 무상양여 및 매입 경비 등 지원사항입니다.

여기에 원래 문희상·김병호 두 의원님이……

○노현송 위원 원래 안건은 할 것 없고 조정한

것만 얘기해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환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 또는 사용 허가할 경우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사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게 되고 국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국유지의 무상양여, 사용 허가 조항을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자체가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기간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최규식 위원 이게 해당 지자체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까, 정부 내에서 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정부 내에서 얘기가 된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된 것입니다.

○유기준 위원 무슨 협의가 돼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양해가 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지자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우제항 지자체에서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정부가 그대로 무상양여를 해 달라……

○이인기 위원 일부 보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합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공공용지 중에서 도로 공원 하천, 이 세 가지에 대해서입니다.

○이인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고 하는데 몇 % 정도를 예상합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국고 지원을 70% 정도 하고 지방비를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현송 위원 상당히 많이 해 주네. 70%면 굉장히 많이 해 주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김진영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공원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100평을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요구

에서 70% 정도를 정부에서 해 주고 ‘나머지 30%는 너희들도 부담하라’ 이런 뜻입니다.

○**노현송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주는 거라고.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공원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거의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공원 많이 해 달라고 그런다면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김진영 공원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자체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두 번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특례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특례 적용을 삭제하고 평택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신설 등에 관한 특례조항으로 대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구역의 해제는 환경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대 이전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지위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을 결론이 나 가지고 그린벨트 존치 필요성이 없으면 정식 절차에 따라서 해제하거나, 해당 지역을 그린벨트 입지 가능한 도시공원 등 시설로 활용하는 등 그린벨트 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게 활용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특례 적용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조항은 수용하되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으로 지역투자 유발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국업체 입주 허용 등 특례를 적용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 요구 내용입니다.

평택지원특별법에서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미군 평택 이전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운용되는 것으로 사업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군공여지역 또는 반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수행하게 되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련 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

택지원특별법과는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업이 일반회계를 통해서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봐서 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 위원** 전체를 묻기 전에 개략적으로 물어봅시다.

반환공여 상태가 아니고 반환공여에 빠져 가지고 그대로 공여상태에 있는 지역도 보호하는 개념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공여지역 그대로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들어갑니다.

○**입법조사관 정순임** 세 안 중의 가장 큰 차이가 우선적용지역의 차이인데요. 문희상 의원님 안은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그리고 그 양 구역의 주변지역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재창 의원님 안은 반환공여지, 그러니까 철수 지역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에서는 문희상 의원님 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기 위원** 철수 지역은 법상으로 가지적으로 나오는데 공여지역에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김진영 워낙 이 법안 처음 취지가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반환공여까지 포함시켜서 하자 그래서 반환공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은 그동안 낙후된 시설에 대한,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소득 증대사업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한 계획 수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기 위원** 어느 조문에 있습니까?

다음 하세요.

○**소위원장 우제항** 원래 취지가 반환지 공여지가 아니라 주변지역의 경제 살리기 위해서 추진……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김진영 예, 그러다가 미군기지가 이전되면서 반환구역이 들어갔습니다.

○이인기 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주한미군 주둔지역을 지자체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예.

○유기준 위원 이 말은 결국 무상양여 쪽으로 의견을 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에 지자체가 부담할 금액을 적게 가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도로 공원 하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공원 하천이 안 들어가는 공공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다가, 지금 30%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금액도 사실 마련하기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평택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해당 지역이 16만 평이에요. 평당 시가가 한 300만 원 정도면 해당 지자체가 30%인 90만 원씩 내면 1500억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게…… 아까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확인해 보니까 협의 안 했다고, 말만 왔다갔다 했을 뿐이지 합의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 취지를 살려야 되고, 해당 지자체 미군부대의 주민들은 적어도 5, 60년 동안 부담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가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 설치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반환공여지역이 전국에 5~6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당 지역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텐데 부산이면 부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지 2분의 1 이상이 반환공여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하나하나마다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먼저 무상양여 부분은 사실은 7 대 3 비율이면 정부에서 충분히 부담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산의 경우에 1500억 정도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한번에 많은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5년 이상 20년 이하 분할 상환 부분을 그래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양여나 사용허가를 불가한 부분은 저희가 국유재산을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양여의 특별한 조항을 마련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부분을 이것 말고 다른 이유로 또 요구를 할 거거든요.

○유기준 위원 아니, 그동안에 부담하는 정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적어도 미군부대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유기준 위원 미군부대가 주둔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면서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혜택과 부담을 균등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와서 부담이 된 그런 해당 지자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답이 있어야 마땅한 거지요. 그것을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공통의 원리에 의해서 따지면 오히려 처음부터 평등하지 않은 것을 평등하게 보려는, 그런 잘못된 거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피해를 본 것, 또 부담을 줬던 것을 생각해서 70%를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안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70%를 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래서 형식을 보조받아 가지고 사는 걸로 해 가지고 무상양여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70%를 주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관계 부처, 중앙과 지방의 어떤 절충을 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절충을 기하지 않았는데……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관심사항 중 또 하나가 생활의 질,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들에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지자체가…… 안 그래도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가 보면 공원지역의 면적이 작아 가지고 아주 주민들의 삶이 여러 가지 황량하고 풍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30%가 되었던 20%가 되었던 어쨌든 지자체에 부담을 주면서 공원을 조성하게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부가 우리한테 땅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하얏리아…… 부산에서 그 전체를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춘천이나 그 이외의 도시도 다 그것에 따를 것이다,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나면 부산시에 “그러면 너희들이 최대한 공원을 얼마를 요구하느냐?”라고 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최대 맥시멈을 잡아 줍니다. 그 맥시멈 잡아 주는 것까지는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해 주고 “만약 너희들이 더 욕심내서 공원을 또 조성하겠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하라”라고 해서 그 면적을 개별 지자체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유기준 위원 16만 평이라고 그러면 해당 지자체가 도로 공원 하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다는 아닐 겁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다는 아닙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비율이 50대 50이라고 그러면 나머지 50은 매수하게 만들어서 그 돈을 취득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50%는 무상으로 해야 맞죠?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부산의 경우에는 맥시멈을 70%로 할지 60%로 할지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데,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어떤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대도시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 ‘70%를 우리가 공원을 하겠다’, 그러면 70%에 대해서는 전액을 무상으로 보조해 주고 ‘우리는 80%까지 공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10% 초과

되는 비용은 너희들이 부담하라’, 이것을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걸 협상하는 게 아니고.

○유기준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데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결국 70대 30이나 80대 20 정도까지 접근이 되더라라는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국방부하고 개별 접촉하면서 우리가 공원의 상한선을 둔다는 얘기예요.

○유기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나머지 땅은 매각이 됩니다.

○유기준 위원 매각하면 또 거기 공원 옆에 아파트 들어서고 여러 가지 상가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아니지요, 그것은 별도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원 면적이 중앙부처와 협의가 되고……

○소위원장 우제향 지금 참고로…… 국방부 나와 계세요?

○국방부군사시설국관제보상과장 박만근 예, 국방부 관제보상과장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향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주한미군대책기획단사업지원부지역지원팀장 전영욱 예.

○소위원장 우제향 잠깐 앉아 봐요.

지금 나머지 땅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LPP 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이전기금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나머지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달라는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못 주는 이유를 한번 들어 보죠.

국방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국방부군사시설국관제보상과장 박만근 기본적으로 기지 이전사업은 기존 반환 부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무상양여를 해 주면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 그 부족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해

주면 저희 국방부 측에서는 무상양여를 해 주든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게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회의라든가 관계 부처 국장님 회의 이렇게 거쳐 가지고 오늘 정부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조율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단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시행령상이라든지 국방부가 필요한 부족 재원에 대해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장치만 마련해 주면 저희 국방부로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이 법에다가 그런 장치는 해 줄 수 없잖아, 이전자금을 이 법에다가……

○국방부군사시설국관제보상과장 박만근 예, 지금 법에는 원칙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매입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총리실에서 말씀해 보세요.

○국무조정실주한미군대책기획단사업지원부지역 지원팀장 전영옥 총리실에서도…… 일반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책임을 맡고 하고요, 부처 간에 제일 쟁점인 국유재산 무상양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안을 낸 대로 지금 총리실에서도 기본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대로 입법을 해주시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지자체가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또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차질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자부 측에서도 자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이 법 내용을 보면, 만약 현 상태대로 매각을 한다면 경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선행하고 토지 용도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공원 부지를 만약에 70%…… 지금 부산 같은 경우 70%를 공원을 하겠다라는 그 70의 상한선만 지금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각 도시마다 다니면서 정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우제항 나머지는 풀어 주고?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나머지는 다 풀어 주고, 그러면……

○소위원장 우제항 땅값이 올라간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그렇게 해서 이전 비용을 뽑는 것으로……

○소위원장 우제항 그냥 땅 팔아먹는 것보다는 계획을 바꾸어서 팔아먹는 게 더 나오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특별회계 문제는 어떻습니까? 각 지역마다 다른 거고……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그 특별회계 문제는, 이 사업은 전액을 일반회계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지역개발……

○유기준 위원 자꾸 제가 부산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의 하얏리아 부대 같은 경우는 부대 자체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부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미군부대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그 부대 용지를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당 지역이 전국에 네다섯 군데 되는데 각 특수한 사정들이 있고 도시 면적의 얼마를 차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율도 차이가 나고, 또 미군부대가 이전해 가는 게 없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 단체마다 특별회계를 해서 하는 게 명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런데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실익이, 사실상 재원을 다른 데로 새지 않게 한다는 것이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재원이 전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거고, 또 이를테면 용산 미군기지 같으면 거기 판 돈을 가지고 평택에다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라는 칸을 지어 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놓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유기준 위원 정부에서 볼 때는 이게 국고 부

담을 줄이면서 결국은 각각…… 이게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정부가 출연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결국 주판알을 튕겨 가지고 한 5, 6개 정도 특별회계 나와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잘되는 것 끼리 경쟁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 하얏리아 부대를 이전하는데 30%를 가지고 이 70%를 다 부담할 수 있으면 특별회계로 해도 괜찮겠지요.

○**유기준 위원** 하얏리아 부대는 아예 이전 문제가 없습니까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러니까요, 하얏리아 부대 땅을 마련할 때……

○**소위원장 우제항** 아니, 지역구가 그래서 예를 든 거지. 하얏리아 부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더 큰 걸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자꾸 하얏리아 부대가 얘기되면 동두천이나 파주나 다른 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위원님은 전체적인 것 질의하신 거니까……

○**최규식 위원** 위원장님, 정부 부처가 협의해 가지고 원래의 입장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해당 지자체하고도 양해가 됐다고 하는데 해당 지자체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현재 있습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여기 시의회 의원들이 와 있는데요……

○**최규식 위원**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의견을 들어 볼 수 있으면 들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다음에……

○**소위원장 우제항** 왜냐하면 지자체 의견도 도로 공원 하천에 하는데, 아까 최규식 위원님이 잠깐 나가 계신 자리에 국방부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 판 비용으로 이전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 동두천시의 전 시의장이나 대책위원장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 들어와서…… 다른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김진영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공원이 높고 동두천이나 이런 데는 공원이 낮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 같은 데는 공원이 한 70% 들어가고 동두천은 15~20% 정도, 각 도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장하고 다 협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견을……

○**소위원장 우제항** 잠깐만요, 됐어요.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국방부에서 나오셨어요?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국방부 누굽니까?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의 대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식이라고 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말씀하십시오.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반환 부지의 용도를 공원으로 얼마를 할 거냐, 또 다른 도로나 하천 또는 상업용지, 주거용지 이런 걸로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자체계획들을 다 수립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국방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위원장 우제항** 조정이 필요하지요.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저희가 대표적으로 부산시에 세 번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부산시 하얏리아 부지는 16만 평 중에서 57%가 현재 도시계획상의 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3%가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아닙니다.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다 듣고 얘기해요, 다 끝난 다음에.

○**유기준 위원** 아니, 틀린 말을 하니까.

부산시에서 작년 9월에 근린공원 및 공공용지로 이미 고시를 했어요.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그것은 기존에 그 부지가 그랬었는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100% 다 공원용지로 쓰겠다 해 가지고 100%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 많지 않느냐, 최초에 되어 있던

57%만 공원용지로 하고 나머지는 주거·상업용지로 해서 지가를 좀 높여서, 국방부도 이전비용을 획득해야 되니까,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지자체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입법안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도록 추후에 국무조정실하고 저희 국방부, 또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되 무상양여 하는 퍼센티지는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만 합의된 거지요?

○국방부군사시설국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소위원회에서 동두천 미군 현안대책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위원장 우제항 인사는 빼고 간단히 원하는 바만 얘기해 주세요.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조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서 좀 답답한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0여 년 동안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지고 왔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아는 사항이니까 조항 중에서 이런 조항은 가장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해 주셔야지, 여기가 연설하는 장소도 아니고.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여기 제 14조가 제일 쟁점인 것 같습니다.

○입법조사관 정순임 23쪽입니다.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23쪽의 제14조.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시하고 조정하고 조율했던 부분이 이 원안인데 지금 조정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을 보게 되면 하천 도로 공원만 매입하고자 할 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천과 도로, 공원만 매입할 때 보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체 면적이냐, 또는 저희가 공여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필요치 않은 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청이 앉아 있던 그 자리, 1225만 평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한 300만 평 내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동두천시의 재정지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방부의 재정이 어렵다면 한 부분만이라도 무상 또는 보조를 주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이냐 도로, 하천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무리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국가의 어려운 부분을, 고통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이해한다면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치단체별로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정안 가지고는 저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소위원장 우제항 알았습니다, 23페이지하고요.

또 다른 것은요, 반환공여지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그다음에는 거의 불만스러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정비법 문제가…… 저희 같은 데는 사실 수도권이면서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여기 당사자, 미군이 들어오는 지역도 말 못 해.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보니까……

○소위원장 우제항 파격적인 대우예요.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제14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가지고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죄송하지만 의견 개진하셨으니까 뒤에 앉으시고……

지금 동두천 쪽의 재정도 열악한데 도로 공원 하천만 가지고서는 경제 회복이 힘들다, 주변지역 개발이 힘들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다든지 설명을 해서 우리를 납득 좀 시켜요.

○**유기준 위원** 다른 지역도 있는데 더 들어 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다른 지역 안 오셨어요.

○**유기준 위원** 아니, 부산에서 오셨어요.

○**소위원장 우제항** 부산, 부자동네에서…… 좀 가만있어 봐요.

○**유기준 위원** 아니, 같이 들어야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부산 누가 오셨어요?

○**부산광역시도시정비담당관실사무관 류재학** 부산시도시정비담당관실 담당사무관 류재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하얏리아 부대는 총 16만 평입니다. 현재 공원 및 공공용지로 이미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블록별로 도로를 중심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일단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양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몇 % 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공원 및 공공용지로 지자체가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 주고, 또 택지로 할 때는 유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5년에서 20년, 10년을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50년 동안 하얏리아가 점유를 했기 때문에 50년 분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소위원장 우제항** 앞으로 평택은 100년간으로 되었어요, 미군이 들어오면……

○**부산광역시도시정비담당관실사무관 류재학**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달라는 쪽에서는 거저 달라고 그러고 주는 쪽에서는 돈 없어서 못 주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상으로다가 반환공여지를 주었을 때 국유지를 달라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국방부와 행자부하고 해 가지고 더 주냐, 덜 주냐 하는 것은 위임해 주고 원칙적인 것은……

단 한 가지 아까 동두천시에서 이것 가지고서는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가는 지역에 있어서 공여지 반환으로 해 가지고, 나가면 뭔가 이득도 봐야 되는…… 일례를 들면 도로 공원 하천만 하고 나머지는 용도 바꾸지 않습니까? 용도 바꾸면 땅값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 일부를 지자체의 수입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해 놓으면 서로가 윈-윈 아니에요? 어차피 용도를 바꿔 줘야 땅값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 부산시도, 필요한 경우 국방부 채원 한도에서 여분이 생길 수 있으면 그렇게 지자체에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지금 동두천에서 하는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청을 양여부지 그 땅에다가 지어 놓았는데 지금 이 법에 의하면 도로 공원 하천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또 시비를 들여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좀 넓혀 달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획예산 처라든지 정부 부담이라든지 또는 재정부에서 국유지 관리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처음에는 어떤 주장을 폈느냐 하면 ‘일체 무상양여는 안 된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것은 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동두천 내에 있는 시청 부지 그것 몇 평이에요?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것은 일례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것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더 준 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면 곤란하지요.

○**이인기 위원** 따로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이 법에 관계없이……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그 조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문……

○**소위원장 우제항** 이 법에 안 해도……

○**강창일 위원** 교부세니 뭐니 많이 있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우제항** 나중에 교부세법을 손볼 때 미군이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더 줄 수 있다……

○**입법조사관 정순임** 지금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위원장 박수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재정적 문제 때문에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매입한다든가 시비를 플러스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원 외에 대한 부분도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국방부의 재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강창일 위원** 국방부의 재정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와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풀 수는 없고, 이렇게 제한하고 재정적 문제는 여기에 다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소위원장 우제항**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게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유기준 위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이고, 해당 지자체라든지…… 저희들도 이 법 조문이 오래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물아물해 가지고 시간을 한 번 더 정해서 하는 쪽으로 해 보지요.

○**소위원장 우제항** 한 조문씩 다 축조심의하려면 언제 해요?

○**유기준 위원** 내용 자체도 봐야 되고 법 조문 형식에 맞는지도 봐야 되니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지요.

○**강창일 위원** 하나 여쭙습니다.

이것이 반환지역하고 새로운 공여구역 두 가지 법을 짚뽕한 것이거든요. 본래 내용이 다른 것인데 모아 놓아서 법 형식에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재창 의원님하고 김병호 의원님하고는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이것 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창 의원님은 무상양여를 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 대신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니까 대환영하셨습니다. 김병호 의원님은 무상양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제가 세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 법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저희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도로 해 가지고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시간이 흘러 버리면 사실은 그 해당 지역이 손해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이 법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것은 해당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여태까지 고통을 당해 왔는데 계속 더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부 의견들이 모아졌을 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이 법이 통과 안 되면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이것 때문에 동두천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통과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또 난리일 것입니다.

○**강창일 위원** 부산 분들은 와 계세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장 김진영** 부산도 정부 측에서 “최대한 너희들 의견을 들어 주겠다”고 해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렇게 하지요. 저는 아주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보고 있고, 행자부에서 앞으로도 모든 일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기를 바라고요.

다만 법문 형식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해당 지자체하고 조율도 해야 되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정해 가지고 빨리 타결 짓는 방향으로 하지요.

○**강창일 위원** 지금 몇 가지 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개인이 보는 것보다는 정부 측에서 오랫동안 숙의하고 토론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 제기된 것 가지고서 일단 통과시키면 어떻

겠습니까? 유기준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왔는데 또다시 한다 하더라도 큰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유기준 위원** 다음 주 화요일에 법안소위를 한다 하더라도 며칠 상간밖에 안 되는데 혹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다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그때 보완할 수가 있으니까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균형발전팀건축사무관 이중재**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조문의 자구가 법체계에 맞는 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법체계에 맞게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유기준 위원** 제가 원래 결벽증이 있어서 완성도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자구 수정을 한번 더 보는 것으로 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문희상 의원안, 이재창 의원안, 김병호 의원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단일안으로 하고, 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 초안을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체계 자구는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 대통령령에서 70 대 30으로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국방부하고 논의가 되거든요. 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국방부가 가서 해당 지자체하고 합의를 하고 옵니다. 그것을 올리면 승인을 해 줍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문희상 의원안과 이재창 의원안, 그리고 김병호 의원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인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나머지 자구 수정과 조문 관계에 관한 것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풍수해보험법안(정부 제출)

(19시02분)

○**소위원장 우제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3항 풍수해보험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정 법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나 행정부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의견 수렴장치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국회 공청회를 생략했으나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있어서 오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소방방재청에서 의견 수렴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국회나 소위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니까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창일 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이재창 위원님께서 보험이니 뭐니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인기 위원** 상임위 전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농해수위를 보니까 보험 도입하는 것으로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공청회를 하려면 전체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일정에서 공청회 일정을 빼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 일정, 저희 상임위원회 일정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방방재청복구지원본부장 방기성** 참고로 건의 말씀드리면, 지난 예산심의 때 시범사업 19억을 일단 통과시켜 주셨거든요.

○**유기준 위원** 시기적으로 내년 6월 이전에만 법이 시행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복구지원본부장 방기성**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지구이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3월부터는 보험 가입에 나서야 되거든요. 보험 가입을 3월에 나서려면 2월이나 1월 중에 보험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보험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면 시범사업에 차질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합니다.

○**강창일 위원** 위원장님, 시기 문제도 있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형식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공청회보다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는 데 참조하기 위해서 조출히 약식 공청회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을 몇 분 모셔서 얘기를 듣기로 합니다.

○소위원장 우제항 전체 일정이 안 나오면 소위원회에서만이라도 관계 의견과 진술을 듣는 약식 공청회를 갖도록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다음 법안소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의견도 다르고, 정부 측에서는 공청회를 거쳤다 하나 국회에서도 전체에서 공청회는 못 할망정 최소한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만이라도 의견을 듣기로 했으니까 다음 소위원회 할 때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복구지원본부장 방기성 공청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좋지만 연내에만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우제항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측에서도 긴급한 법안이라는 것을 인식해 가지고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빼 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제일 뒤를 보시면 지난번 정치자금법에 의원님들 후원회의 모금·기부 한도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보 정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소위원장 우제항 그런데 이 착오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정개특위에서요.

○소위원장 우제항 정개특위에서가 아니에요.

○유기준 위원 정개특위가 없어져서 우리 행사위에 온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저희 위원회 소관 법률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우제항 정개특위에서는 논의 자체를 안 했는데 이것이 들어가 버린 것이예요.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과거에는 이것이 관보 정정으로 됐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 가지고……

○소위원장 우제항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위원회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행정 부처 공무원들, 특히 협조를 잘해 주신 법률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창일	노현송	김정권	유기준
이인기	최규식	우제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김종현

○정부측 참석자

행정자치부			
제 2 차 관	문원경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상호		
지방행정본부장	권혁인		
지방지원본부장	박연수		
균형발전팀장	김진영		
균형발전팀장사무관	이중재		
의정관	김국현		
조직혁신단장	이창구		
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조창현		
사무처장	정택현		
고위공무원단체도			
실무추진단장	정하경		
소방방재청복구지원본부장	방기성		
경찰청			
경무기획국			
국장	홍영기		
법무과장	최동해		
○기타 참석자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장	정용준		
기획예산처재정운용기획관	김대기		
국방부			
군사시설국			
대미시설과중령	박윤식		
관제보상과장	박만근		

동두천시마군현안대책위원장	박	수	호
국무조정실주한미군대책 기획단사업지원부 지역지원팀장	전	영	욱
부산광역시도시정비 담당관실사무관	류	재	학